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2007. 12

홍범교 · 기은선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 론	9
II.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10
1. 영 국	10
1.1. 조세지원제도	10
1.2.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18
2. 중 국	21
2.1. 조세지원제도	21
2.2.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49
3. 싱가포르	52
3.1. 조세지원제도	52
3.2.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68
4. 말레이시아	72
4.1. 조세지원제도	72
4.2.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108
5. 대 만	110
5.1. 조세지원제도	110
5.2.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122
6. 홍 콩	124
6.1. 조세지원제도	124
6.2.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126
III. 결 론	129
참고문헌	131

표목차

〈표 II-1〉 영국의 법인소득세율	11
〈표 II-2〉 영국의 개인소득세율	12
〈표 II-3〉 영국의 중소기업 요건	13
〈표 II-4〉 영국의 투자소득공제	14
〈표 II-5〉 기업장려지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16
〈표 II-6〉 영국의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17
〈표 II-7〉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18
〈표 II-8〉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영업형태 분포(2004)	19
〈표 II-9〉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업종 분포(2004)	19
〈표 II-10〉 외자기업 중심의 기존 세수우대정책의 문제점	21
〈표 II-11〉 기업소득세법 개정 전후 중국의 법인소득세율 비교	22
〈표 II-12〉 중국의 개인소득세율	23
〈표 II-13〉 세법 개정 이전 외자기업에 적용되던 중국의 세율감면 규정	24
〈표 II-14〉 세법 개정 이전 외자기업에 적용되던 중국의 기간감면 규정	25
〈표 II-15〉 세법 개정 이전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과세소득 공제항목 비교	26
〈표 II-16〉 세법 개정 이전 외자기업에 적용되던 중국의 재투자세 환급 규정	28
〈표 II-17〉 중국의 투자소득공제	28
〈표 II-18〉 중국의 투자세액공제	29
〈표 II-19〉 중국의 관세 및 증치세 면제 혜택	30
〈표 II-20〉 기업소득세법 개정 전후 지방정부에 의한 조세감면 비교	30
〈표 II-21〉 중국의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32
〈표 II-22〉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33
〈표 II-23〉 중국의 연해경제개방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33

〈표 II-24〉 上海-浦東 신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34
〈표 II-25〉 중국의 첨단기술개발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34
〈표 II-26〉 外高橋(Waigaoqiao) 자유보세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35
〈표 II-27〉 중국의 가공수출제품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35
〈표 II-28〉 新 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38
〈표 II-29〉 중국의 생산성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39
〈표 II-30〉 중국의 수출지향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39
〈표 II-31〉 중국의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40
〈표 II-32〉 중국의 농수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41
〈표 II-33〉 중국의 SOC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42
〈표 II-34〉 중국의 금융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42
〈표 II-35〉 중국의 소프트웨어(S/W) 및 전자회로(IC)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43
〈표 II-36〉 R&D 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중국의 조세감면 혜택	44
〈표 II-37〉 기업소득세법 개정 전후 감면세액 추징사유 비교	46
〈표 II-38〉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49
〈표 II-39〉 중국의 산업별 외국인투자 유치 추이(2004)	50
〈표 II-40〉 중국의 국가별 외국인투자 유치 추이(2004)	51
〈표 II-41〉 싱가포르의 tax incentive 제도와 담당기관 예시	54
〈표 II-42〉 싱가포르의 법인소득세율	54
〈표 II-43〉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율	55
〈표 II-44〉 금융업의 역외소득에 대한 싱가포르의 세율감면 규정	57
〈표 II-45〉 싱가포르의 개척자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	60
〈표 II-46〉 싱가포르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62
〈표 II-47〉 싱가포르의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62
〈표 II-48〉 싱가포르의 R&D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63
〈표 II-49〉 싱가포르 기타의 소득공제 혜택	64

〈표 II-50〉 R&D 허브 구축을 위한 싱가포르의 조세지원제도	65
〈표 II-51〉 운영총괄본부에 대한 EDB의 승인요건	66
〈표 II-52〉 싱가포르의 운영총괄본부를 위한 조세감면 혜택	67
〈표 II-53〉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9
〈표 II-54〉 싱가포르의 총고정자본형성액 중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기여도	69
〈표 II-55〉 싱가포르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잔액 비율(1970~2003)	69
〈표 II-56〉 싱가포르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1970~2003)	70
〈표 II-57〉 싱가포르 정부의 2007 예산안	71
〈표 II-58〉 말레이시아의 법인소득세율	73
〈표 II-59〉 말레이시아의 개인소득세율	73
〈표 II-60〉 말레이시아의 개척자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	74
〈표 II-61〉 말레이시아의 투자소득공제(제조업)	77
〈표 II-62〉 말레이시아의 투자소득공제(서비스업)	78
〈표 II-63〉 말레이시아의 재투자공제	79
〈표 II-64〉 말레이시아의 산업구조조정 공제	80
〈표 II-65〉 말레이시아의 가속자본공제	81
〈표 II-66〉 말레이시아의 개척자 지위 및 투자소득공제(제조업)	83
〈표 II-67〉 말레이시아의 수출증가금액에 대한 세금면제(제조업)	84
〈표 II-68〉 말레이시아의 식품생산기업 투자를 위한 tax incentive package	86
〈표 II-69〉 말레이시아의 식품 냉장 유통시설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88
〈표 II-70〉 말레이시아의 생명공학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	89
〈표 II-71〉 말레이시아의 관광산업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	90
〈표 II-72〉 말레이시아의 개척자 지위 및 투자소득공제(환경관리사업)	91
〈표 II-73〉 말레이시아의 R&D 활동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92
〈표 II-74〉 말레이시아의 교육훈련 활동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93
〈표 II-75〉 말레이시아의 정보통신기술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94
〈표 II-76〉 말레이시아의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94

〈표 II-77〉 말레이시아의 지식기반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95
〈표 II-78〉 말레이시아의 제조관련 서비스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96
〈표 II-79〉 말레이시아의 해외투자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97
〈표 II-80〉 말레이시아의 운영총괄본부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98
〈표 II-81〉 말레이시아의 국제적인 조달센터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99
〈표 II-82〉 MSC 지위기업이 되기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101
〈표 II-83〉 MSC 지위 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101
〈표 II-84〉 라부안의 조세체계	103
〈표 II-85〉 라부안에서 역외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역외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104
〈표 II-86〉 말레이시아의 관·판매세·국내소비세 면제 혜택	106
〈표 II-87〉 말레이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108
〈표 II-88〉 대만의 법인소득세율	111
〈표 II-89〉 대만의 개인소득세율	112
〈표 II-90〉 대만의 신흥·주요·전략산업을 위한 tax holiday 혜택	113
〈표 II-91〉 신규 장비·기술 투자에 대한 대만의 투자세액공제제도	114
〈표 II-92〉 대만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115
〈표 II-93〉 신흥·주요·전략산업 주식투자에 대한 대만의 세액공제 혜택	116
〈표 II-94〉 기반시설사업 주식투자에 대한 대만의 세액공제 혜택	116
〈표 II-95〉 신흥·주요·전략산업 주식투자에 대한 대만의 세금감면 혜택	117
〈표 II-96〉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대만의 세금감면 혜택	117
〈표 II-97〉 생명공학·제약 산업과 기타 산업의 투자세액공제 규정 비교	118
〈표 II-98〉 운영·생산과 관련된 기술 취득에 대한 대만의 세금감면 혜택	119
〈표 II-99〉 대만의 자유무역항기업에 주어지는 세금감면 혜택	121
〈표 II-100〉 대만의 과학산업단지, 수출가공구,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121
〈표 II-101〉 대만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123
〈표 II-102〉 홍콩의 자본공제제도	125

〈표 II-103〉 홍콩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126
〈표 II-104〉 홍콩의 총고정자본형성액 중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기여도	126
〈표 II-105〉 홍콩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2005)	127
〈표 II-106〉 홍콩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2005)	127

I. 서론

- 국제적으로 지역 간 자본 이동이 자유화되면서 국가 간에 자본유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단기외채와는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발생하고, 생산기술 및 경영기술을 포함한 무형의 자산까지 이동되는 복합적인 투자기 때문에 경제적인 중요성이 큼.
 -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 및 고용창출, 외화확보, 기술이전, 선진 경영기법 습득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보다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그러나 각 국의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태, 산업발전 목표 등에 따라 조세지원의 대상과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6개국을 중심으로 살펴봄.
 - 2005년 외국인투자 부문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영국 및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5개국(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함.
 - 이들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1. 영 국

1.1. 조세지원제도

가. 개요

- 조세감면보다 보조금 위주의 투자인센티브를 운용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지만, 주요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소득세율(법인 30%, 개인 40%)을 적용하고 있음¹⁾.
 - 세율감면이나 tax holiday와 같은 조세감면 혜택은 없음.
- 영국의 tax incentive는 투자장려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점차 특정 항목에 대한 투자장려정책은 축소하는 대신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변화되고 있음²⁾.
 - 낙후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역시 조세감면보다 보조금 등 다른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1) 2007년 1월 1일 현재 EU 회원국의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불가리아 10%, 키프러스 10%, 아일랜드 12.5%, 라트비아 15%, 리투아니아 15%, 루마니아 16%, 헝가리 16%, 폴란드 19%, 슬로바키아 19%, 에스토니아 22%, 슬로베니아 23%, 체코 24%, 그리스 25%, 포르투갈 25%, 네덜란드 25.5%, 핀란드 26%, 스웨덴 28%, 덴마크 28%, 룩셈부르크 29.63%, 오스트리아 30%, 스페인 32.5%, 프랑스 33.33%, 벨기에 33.99%, 몰타 35%, 이탈리아 37.25%, 독일 38.36%로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음. 영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EU 국가들도 있지만, 영국은 UNCTAD가 집계한 2005년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대상국가에 포함시킴.

2) www.ibfd.org/European Taxation Database/UNITED KINGDOM/A.2.13. Incentives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EU 집행위원회와의 합의하에 기업장려지구 (Enterprise Zones)를 지정·운영하였으나, 2006년 10월 Tyne Riverside 기업장려지구의 지정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기업장려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있음.

- 영국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감면에 있어 지원규모 및 대상지역이 대폭 축소되고 있음.
- 일부 남아 있는 조세감면 혜택 역시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나. 세율

1) 법인

- 한계공제 고려 후 각 이익구간에 대한 한계세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1〉 영국의 법인소득세율

(단위: £, %)

과세소득	0~300,000	300,001~1,500,000	1,500,001~
세율	19	32.75	30

자료: 영국국세청(www.hmrc.gov.uk)

- 한편 영국의 2007~08 예산안에 따르면 2008년 4월 1일부터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어 28%가 될 예정

2) 개인

-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로 과세소득이 구성되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함.

〈표 II-2〉 영국의 개인소득세율

(단위: £, %)

세율 유형	소득구간	2007~08 세율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저율	0~2,230	10	10	10
기본	2,231~34,600	10	20	22
고율	34,601~	32.5	40	40

자료: 영국국세청(www.hmrc.gov.uk)

- ☐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별도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바,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소득세 세율과 동일하나, 당해 납세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을 적용함.

다. 가속상각³⁾

- ☐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최초연도공제(First Year Allowances; 이하 ‘FYAs’)'라고 하는 가속상각제도를 두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공장 및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25%, 산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4%의 상각률이 적용되며, 산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1) 중소기업의 공장 및 기계장치 투자

- ☐ 중소기업이 공장 및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액의 40%를 투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 아래의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함.

3) http://www.hmrc.gov.uk/capital_allowances/investmentschemes.htm

〈표 II-3〉 영국의 중소기업 요건

(단위: £)

구분	소기업	중기업
연매출액	5,6백만 이하	22.8백만 이하
자산총액	2.8백만 이하	11.4백만 이하
종업원 수	50명 이하	250명 이하

자료: 영국국세청(www.hmrc.gov.uk)

2) 에너지 절약·절수·환경설비 투자⁴⁾

□ 다음과 같은 에너지 절약·절수·환경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액의 100%를 투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에너지 절약 공장 및 기계장치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0gm/km를 초과하지 않는 차량, 천연가스, 수소 연료 시설
- 절수 공장·기계장치

라. 투자소득공제⁵⁾

□ 영국은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투자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4) 에너지 절약·절수·환경설비에 대한 FYAs를 특별히 Enhanced Capital Allowances(이하 “ECAs”)라고 하며,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음.

5) www.ibfd.org/European Taxation Database/UNITED KINGDOM/A.2.7. Deductions

〈표 II-4〉 영국의 투자소득공제

항 목	조세지원 내용
R&D 공제	• 중소기업(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중소기업 제외) -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1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다만, 손실이 발생하여 R&D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24%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한도: 당해 사업연도 동안 기업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 대기업(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중소기업 포함) -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12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2006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판정에 있어 종업원 수 기준을 25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 조정함¹⁾. • 백신연구개발기업 - 재정법 2002(Finance Act 2002)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50%를 추가 공제함.
과학연구기관 또는 승인받은 대학 등에 지급한 금액	기업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무역산업부의 승인을 받은 과학연구단체(Scientific Research Association: SRA), 대학 및 유사 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벤처 캐피털 투자	• 감면대상기업: 벤처기업 주식에 30% 이상 투자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기업 • 조세감면 혜택 - 투자액의 3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주식 처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다른 벤처기업 투자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²⁾.

주: 1) <http://www.ukinvest.gov.uk/1/d/185/en/KR/1.0.html>

2) 일반적인 경우 자본손실이 발생하면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이득과는 통산이 가능하지만, 기타 다른 소득과는 통산이 불가능함.

마.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 기업장려지구(Enterprise Zone)⁶⁾

가) 개요

- “기업장려지구”란 영국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와의 합의하에 산업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함.
- 기업장려지구 설립의 근본 취지는 외국인투자 유치보다 특정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에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기업장려지구의 일부는 사업활동 지역으로 개발됐고, 일부는 제조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활용되고 있음⁷⁾.
-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국가보조금규칙(European Community State Aid Rules)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및 기업장려지구 입주가 제한됨.
 - 제한 업종: 합성섬유, 자동차, 금속, 조선, 석탄 및 철강, 농업, 식품가공, 어업 등
- 2006년 10월 Tyne Riverside를 마지막으로 모든 기업장려지구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현재 추가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

나) 세금감면 혜택

- 기업장려지구로 지정되면 10년 동안 다음과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세금감면 혜택은 신규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에도 적용됨.

6) <http://www.hmrc.gov.uk/manuals/camanual/ca37000.htm>

7) 김병섭(2004) p. 91~93.

〈표 II-5〉 기업장려지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구 분	조세지원 내용
산업용·상업용 건물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FYAs)	• 산업용·상업용 건물의 건설·증설·개량에 소요된 비용(부속 토지 구입비용 제외)에 대해서는 투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100% 공제가 가능함. - 자신이 사용하든지 임대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함. - 원칙적으로 기업장려지구 지정기간 내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나, 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지정기간 만료 후 10년 내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함. - FYAs 후 장부가액은 정액법(상각률 25%)을 이용하여 상각함¹⁾.
산업용·상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업장려지구에 소재하는 산업용·상업용 재산(소매용 재산 포함)에 대해서는 재산세(National Non-Domestic Rate/Uniform Business Rate)가 면제됨.
역내가공에 대한 관세 면제	• 기업장려지구 소재하는 기업은 역내 가공에 대한 세금감면(inward processing relief)을 신청할 수 있음. - 즉, EU 역외로 수출하기 위해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

주: 1) 예를 들어 투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40%의 FYAs를 신청하였다면 그 해에는 FYAs와 상각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 최대 65%까지 공제가 가능함.

2) 자유무역지역(Free Zone)⁸⁾

□ 개요

- EU 이외의 재화가 EU 관세 영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을 말함.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 등의 징수가 유예되며, 역외국가 쿼터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낮은 보험료, 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짐.
- 관세법(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에 따라 재무부가 지정하며, 현재 영국 내에 5곳(Liverpool, Prestwick, Sheerness, Southampton, Tilbury)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8) KOTRA(2006. 4. 24.)

□ 세금감면 혜택

- 재화의 수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이 외에 자유무역지역에만 적용되는 소비세, 지방정부세, 기타 세금감면 규정은 없음⁹⁾.

3) 지역개발금융기관을 통한 특정 지역 투자¹⁰⁾

- 지역개발금융기관¹¹⁾을 통해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재정법2002(Finance Act 2002)에 의해 투자액의 25%를 5년에 걸쳐 공제할 수 있음.

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¹²⁾

-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6〉 영국의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구분	원천징수 방법
이자소득	• 일반적으로 20%의 저축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EC 이자 및 사용료 지침(EC Interest and Royalties Directive)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가 지급회사의 관계회사(associated company)이고, 다른 회원국의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역외 이자 및 사용료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면제됨.
배당소득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터 부동산투자신탁을 갖고 있는 상장회사는 비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22%의 원천징수세를 공제해야 함.
특허권 사용료	• 일반적으로 22%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EC 이자 및 사용료 지침(EC Interest and Royalties Directive)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급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면제됨.

9) 김병섭(2004) p. 93.

10) [www.ibfd.org/European Taxation Database/UNITED KINGDOM/A.2.13. Incentives](http://www.ibfd.org/EuropeanTaxationDatabase/UNITEDKINGDOM/A.2.13.Incentives)

11) 지역개발금융기관은 주류금융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에 자금과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함.

12) <http://www.deloittetaxguides.com/index.asp?layout=countryAllDtt>

□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를 위한 별도의 조세특례 규정은 없음.

1.2.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¹³⁾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 2004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193%가 증가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함.
- UNCTAD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2005년 1,645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함.
- 최근 들어 M&A의 증가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크게 증가함¹⁴⁾.

〈표 II-7〉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만달러)

국가/지역	1990~2000 연평균	2002	2003	2004	2005
영국	40,321	24,029	16,778	56,214	164,530
프랑스	22,611	49,035	42,498	31,371	63,576
미국	109,513	74,457	53,146	122,377	99,443
EU	207,213	307,081	253,728	213,726	421,899
유럽	215,963	314,168	274,095	217,696	433,628
선진국 ¹⁾	355,153	441,238	358,539	396,145	542,312
전 세계	495,391	617,732	557,869	710,755	916,277

주: 1) 서유럽, 북아메리카, 호주, 이스라엘, 일본, 몰타, 뉴질랜드
자료: UNCTAD(2007)

13) 외교통상부(2005)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14) 2004~2005년의 주요 M&A: Shell Trading Company와 Royal Dutch Petroleum Company의 합병, 미국 GE사의 Amersham 인수, 스페인 Banco Santander Central Hispano사의 Abbey National 인수, 멕시코 Cemex SA사의 RMC Group 인수, Cheung Kong Infrastructure Holdings와 Macquarie Bank Group의 National Grid Transco사의 지역가스배관망 인수 등

□ 주요 투자국가 및 투자업종

- 2004년 기준으로 주요 투자국가는 미국(464건), 캐나다(67건), 독일(60건), 프랑스(57건), 일본(57건) 등과 같은 선진국이고, 주요 투자업종은 정보통신 및 컴퓨터, 전자, 바이오공학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및 R&D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8〉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영업형태 분포(2004)

(단위: 건)

	제조업	서비스업	R&D	전자 상거래	유통· 물류	기타	합계
2000	223	293	82	106	46	119	869
2001	253	291	69	17	42	92	764
2003	265	301	83	14	46	102	811
2004	268	451	101	17	90	139	1,066

자료: 외교통상부(2005)

〈표 II-9〉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업종 분포(2004)

(단위: 건, %)

업종	IT, 인터넷, 전자상거래	S/W	제약, 생명공학	전자	경영지원	금융업	자동차	기타
건수	120	119	82	69	56	54	53	513
비율	11	11	8	6	5	5	5	48

자료: 외교통상부(2005)

□ 외국인투자 유치 성공요인

- 정부의 외국인투자 지원정책보다 영국이 가진 지리적·역사적·문화적 배경, 영국의 개방적인 경제체제가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미국과의 근접성(지리적·문화적·언어적 근접성) 때문에 미국기업들이 對유럽투자 목적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 영국투자청(UK Trade & Investment)과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해외주재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며 수행하고 있음.
 - 영국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문의를 해 오면 해외사무소 직원은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투자청에 자료를 넘기고, 투자청은 각국 대사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
 - 투자청에는 1,000여명이 넘는 투자전담 인력들이 있는데 분야별 전문 인력들이 기업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한 뒤 가장 적합한 지역사무소로 연결함¹⁵⁾.
-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제도는 입지 안내, 행정서비스 지원, 투자애로사항 해결 등 간접지원 위주이며, 80~90년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활용했던 지역선별보조금 등은 EU 통합과 함께 거의 사라짐.

□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에너지, 금융, 문화산업(음악·영화·예술 등) 등 5대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음.
 -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유발효과가 높은 R&D 센터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삼성과 LG전자는 물론 도시바, 노키아, 에릭슨, 모토로라 등 세계 유명 통신기업들이 자사의 R&D 센터를 영국에 두고 있음¹⁶⁾.
 -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EUREKA제도¹⁷⁾, LINK제도¹⁸⁾ 등을 시행하고 있음.

15) 예를 들어 저렴한 노동력을 원한다면 임금이 싼 북잉글랜드나 웨일스를,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원한다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사무소를 소개함.

16) 세계일보(2007. 5. 9.)

17) 유럽 내의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로 영국의 경우 통산부가 주관하고 있음.

18) 영국 내의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산학협동프로그램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각종 개발프로젝트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제도

2. 중 국

2.1. 조세지원제도

가. 최근의 조세동향

□ 중국의 조세개혁

- 중국은 1979년 개방정책 시행 이후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인 조세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7년 3월 전국인민대회에서 내·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채택함.
- 기업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중국 내부에서 제기됐던 외자기업 중심의 기존 세수우대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¹⁹⁾.

〈표 II-10〉 외자기업 중심의 기존 세수우대정책의 문제점

구 분	문 제 점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세원 유실 초래 ¹⁾	• 많은 외자기업들이 수출가격은 낮게, 수입가격은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여 왔음. • 일부 기업은 새로운 외자기업을 설립하고 양자 간에 내부거래를 통해, 감면기간이 끝난 기존의 외자기업은 손실을 보고, 兩免三減半²⁾의 혜택을 받는 새로운 외자기업은 이익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여 왔음.
내자기업의 성장 지연	• WTO 가입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등은 폐지되는 반면 세제우대는 유지되어 내자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야기됨. • 외자기업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내국인이 역외금융센터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외자기업으로 탈바꿈하는 假외자가 크게 증가함³⁾.

주: 1) 국가세무총국의 한 관계자는 외자기업이 각종 수단을 통해 탈세한 금액이 매년 300억원을 초과하며, 그 주요한 수단은 이전가격 조작임을 밝힌바 있음.

2) 이익발생 연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이후 3년간 기업소득세의 50% 감면

3) 假외자의 규모에 관해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재무부 부설연구원의 梅新育 박사는 2004년 640.7억달러의 외자유입액 중 약 1/3이 假외자라고 추정한 바 있음.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p. 2~6.

1) 세율

가) 법인

□ 2007년 3월 기업소득세법 개정 이후 중국의 법인소득세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11〉 기업소득세법 개정 이후 중국의 법인소득세율 비교

2008년 1월 1일 이전	2008년 1월 1일 이후
내·외자기업 모두 동일하게 33%(지방소득세 3% 포함)의 단일세율 적용	• 일반적인 경우: 내·외자기업 모두 동일하게 25%의 단일세율 적용¹⁾ • 특례: - 중소영세기업²⁾: 20% - 첨단기술기업: 15%

주: 1) 기존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던 외자기업에 대한 이행규정

- 현재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외자기업의 경우 5년간 5단계에 걸쳐 세율 인상이 이루어져 2012년에는 25%의 세율 적용(2008년 18%, 2009년 20%, 2010년 22%, 2011년 24%, 2012년 25%)
- 현재 24%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양쯔강 삼각지역과 주장강 삼각지역 등에 소재하는 외자기업의 경우 2008년부터 25%의 세율 적용
- 그러나 낙후된 중서부 지역에 소재하는 외자기업의 경우 2010년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2010년 집행 만기 후 연장 여부는 그 때 가서 별도 규정

2) 중소영세기업: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2조)

- ① 제조업: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자산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② 비제조업: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종업원 수가 8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자산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세법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평균세율이 15%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²⁰⁾.

○ 세법 개정 이전에도 내·외자기업 관계없이 33%의 명목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외자기업은 평균 15%, 내자기업은 평균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왔음.

○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이 폐지·축소됨에 따라 외자기업의 평균세율이 15%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 Wang(2007) p. 101.

- 25%의 세율은 세법 개정 이전 내자기업의 평균세율 25%와 동일하고, 국제적인 평균세율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세체계의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함.

나) 개인

□ 개인소득세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함.

〈표 II-12〉 중국의 개인소득세율

소득의 종류	세 율
근로소득	5~45%
사업소득	5~35%
원고료소득	20% 단일세율 (다만, 납부세액의 30% 경감)
인적용역소득	2만元 미만: 20% 2만元 이상 5만元 미만: 30% 5만元 이상: 40%
사용료·이자·배당·상여·임대·양도소득, 우발적인 소득, 기타소득 등	20% 단일세율

자료: 조성근 외(2005), p. 86~87.

2) 세율감면

- 세법 개정 이전에는 10%, 15% 또는 24%의 감면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율감면 규정은 대부분 폐지됐음.
- 그러나 2006년 3월 16일 이전에 설립된 외자기업은 이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세율이 적용됨(新 기업소득세법 §56).
- 또한 新 기업소득세법 제36조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국무원이 기업소득세 특별항목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어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기존의 세율감면 규정이 부분적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II-13〉 세법 개정 이전 외자기업에 적용되던 중국의 세율감면 규정

세율	대 상 기 업
10%	• 원래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지향기업으로 기업소득세 감면기간 이후에도 수출지향기업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
15%	• 경제특구에 설립됐고, 생산성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경제특구에 시설·장소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성기업에 해당하는 외국기업 •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됐고, 생산성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연해경제개발구,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舊)시가지에 설립됐고, 다음과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 기술집약·지식집약업종 -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업종 - 에너지·교통·항구건설업 • 항구·부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 경제특구 및 국무원이 비준하는 기타 지역에 설립된 금융기관(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등)으로 외국인투자금액 또는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의 1천만달러를 초과하고,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 • 上海-浦東신구에 설립된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 및 에너지·교통·통신건설업(비행장·항구·철도·도로·발전소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첨단기술개발구에 설립됐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北京 신기술산업개발 시범지역에 설립됐고, 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 중서부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 국무원이 정한 기타 지역에 설립됐고, 국가권장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4%	• 연해경제개발구, 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舊)시가지에 설립된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

3) 기간감면

□ 세법 개정 이전에는 외자기업의 경우 2~10년의 기간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기간감면 규정은 모두 폐지됐음.

○ 그러나 경과규정에 의해 2006년 3월 16일 이전에 설립된 외자기업은 이전의 법률에 따라 기간감면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고,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감면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의 시행일(2008년 1월 1일)부터 감면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함(新 기업소득세법 §56).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기존의 기간감면 규정이 부분적으로 부활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²¹⁾.

〈표 II-14〉 세법 개정 이전 외자기업에 적용되던 중국의 기간감면 규정

구분	대 상 기 업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영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다만, 석유·천연가스·희소금속·귀금속 등 천연자원 채취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함)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	- 海南경제특구에 설립됐고, SOC(비행장, 항구, 부두, 철도, 도로, 발전소, 탄광, 수리업 등), 농업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海南省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것 - 上海-浦東신구에 설립됐고, 에너지·교통건설업(비행장, 항구, 철도, 도로, 발전소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上海市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것 -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항구부두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1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경제특구에 설립됐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이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경제특구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것 - 경제특구 및 국무원이 비준하는 기타 지역에 설립된 금융기관(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등)으로 외국인투자금액 또는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관할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것
2년간 100% 면제	첨단기술개발구에 설립됐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관할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것
감면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 농업·임업·목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변방저개발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앞에서 정한 감면기간 이후 10년간 납부세액의 15~30% 감면 - 수출지향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이 감면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출지향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소득세의 50% 감면

21)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2007년 12월 11일 발표)에는 tax holiday 규정의 과도기적 적용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제특구와 上海-浦東신구 지역(5+1지역)에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는 첨단기술기업은 兩免三減半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음.

4) 세전공제항목의 계산

-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해 ‘兩免三減半’으로 대표되는 세수우대정책 이외에도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에 세전공제에 차별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세법 개정으로 양자 간에 차별이 없어짐.
- 세법 개정 이전에는 세전이익에서 공제 가능한 원가·비용·손실 항목의 범위가 내자기업에 비해 외자기업이 더 넓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내·외자기업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세전공제항목을 계산하게 되어 양자 간에 차별이 없어짐.
- 외자기업의 경우 세법 개정 이전에는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였으나, 세법 개정 이후에는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 직원복리비용의 경우 임금총액의 14%, 노조경비의 경우 임금총액의 2%, 직원 교육경비의 경우 임금총액의 2.5%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²²⁾.
 - 광고선전비의 경우 당해 연도 매출액의 15%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하며, 초과분은 이월공제 가능함²³⁾.

〈표 II-15〉 세법 개정 이전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과세소득 공제항목 비교

구분	내자기업	외자기업
대손충당금	연말 미수금잔액의 0.5% 이내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신용·리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연말 채권잔액 또는 미수금잔액의 3% 이내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기부금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당해 연도 과세소득의 3%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국가가 정한 조직 또는 기구가 사회공익사업, 수재지역, 빈곤지역에 제공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 가능
인건비	① 급여: 1인당 매월 800元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② 복리후생비·노조경비·교육경비: 각각 급여총액의 14%, 2%, 1.5%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급여지급기준과 부속서류에 대해 관할 세무당국의 심의·동의를 얻으면 전액 공제 가능
대손금	3년을 초과하여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	2년을 초과하여 회수되지 않은 것

22) 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0조 내지 제42조

23) 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44조

〈표 II-15〉의 계속

구분	내자기업	외자기업
접대비	연간 순매출액이 15百萬元 이하이면 순매출액의 0.5%, 초과하면 순매출액의 0.3%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서비스업은 연간 순매출액 5百萬元 이하이면 순매출액의 0.5%, 초과하면 순매출액의 0.3%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광고비	연간 순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전액 공제
업무선전비	연간 순매출액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전액 공제
배당금수익	경제특구 등 특혜세율지역에 설립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법정세율과 실제세율 간의 차이에 따라 기업소득세 추가징수	중국 내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p. 2.

5) 가속상각

- 세법 개정 이전에는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간에 감가상각 방법에 차이가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에 차별이 없어짐.
- 예를 들면 개정 이전 내자기업은 취득원가의 5% 이상을 잔존가치로 남겨둬야 했지만, 외자기업은 취득원가의 10% 이상을 잔존가치로 남겨두되 관할 세무당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전액 상각하는 것도 가능했음.
 - 또한 내자기업은 법정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 상각이 강제되나, 외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속상각이 가능했음(舊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제40조).
 -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기술진보 등의 원인으로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²⁴⁾에는 내·외자기업 모두 내용연수를 단축하거나 가속상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됐음(新 기업소득세법 제32조).

24) 가속상각 사유(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8조)

- 기술진보 등으로 인하여 상품갱신 속도가 비교적 빠른 고정자산
- 지속적으로 진동, 부식 등의 상태에 있는 고정자산

6) 재투자세금 환급

- 기업이윤의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됐던 재투자세금 환급 규정은 기업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될 예정임.
-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기존의 재투자세금 환급 규정이 부분적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II-16〉 세법 개정 이전 외자기업에 적용되던 중국의 재투자세 환급 규정

구분	대 상 기 업	재투자세금 환급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해당 기업의 증자 또는 영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자본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금액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40% 환급
특례규정	- 외국인투자자가 수출지향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의 직접 운영·확장을 위해 중국 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자가 海南경제특구 내의 기업에서 얻은 이윤을 직접 海南경제특구 내의 SOC기업과 농업개발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금액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100% 환급

7) 투자소득공제

- R&D 비용, 장애인 등의 인건비,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회사 투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함.

〈표 II-17〉 중국의 투자소득공제

항목	조세지원 내용
R&D 비용	• 기업이 신기술·신상품·신공예를 개발하기 위해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50%의 추가공제가 가능함 ¹⁾ .
장애인 등의 인건비	• 장애인 및 국가에서 고용을 장려하는 기타 종업원을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장애인 고용의 경우 100%)가 가능함.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투자	• 창업투자회사가 주식투자 방식을 통하여 비상장 중소첨단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액의 70%를 주식 보유기간이 2년이 되는 해에 창업투자기업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주: 1) 따라서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150%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음.

8) 투자세액공제

- 국산설비, 환경보호·절전절수·안전생산 설비 구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표 II-18〉 중국의 투자세액공제

항목	조세지원내용
국산설비 구입	• 중국 국산설비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국산설비 구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및 증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국산설비가 ‘외상투자기업 산업지도목록’의 장려항목 또는 제한항목 乙에 해당하고, 면세불허상품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투자액의 40%를 이전 사업연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미공제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이 가능함¹⁾. • 그러나 이러한 세제 혜택은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실제로 중국 재정부는 2007년 3월부터 ‘국내투자항목면세불허수입상품목록’에 192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음²⁾.
환경보호· 절전절수· 안전생산 설비 구입	• 환경보호·절전절수·안전생산 등을 위한 전용설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투자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新 기업소득세법 제34조, 동법 실시조례 제100조).

주: 1)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산설비 구입·투자에 있어 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財稅字[2000] 049, 2000. 1. 14.

2) 매일경제(2007. 2. 7.)

9) 관세 및 증치세 면제

- 정부가 정한 일정한 국내외 설비 구입에 대해서는 관세 및 증치세가 면제 또는 환급되나, 최근 들어 면세불허상품목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로 인한 세제 혜택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표 II-19〉 중국의 관세 및 증치세 면제 혜택

항목	조세지원 내용
외국설비 구입	• 외국의 선진기술 및 설비 도입을 통해 산업구조조정과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외자기업 및 국가발전장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외국설비에 대하여 수입 관세 및 증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면제대상품목: ‘외상투자기업 산업지도목록’의 장려항목 또는 제한항목 乙, ‘국가중점발전산업 상품기술목록’ 품목 - 다만, 수입설비가 면세불허상품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국산설비 구입	• 국산설비가 ‘외상투자기업 산업지도목록’의 장려항목 또는 제한항목 乙에 당하고, 면세불허상품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치세를 100% 환급받을 수 있음¹⁾.

주: 1) ‘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 관리 시행방법’, Guo Se Fa [1999] 171, 1999. 9. 20, 중국의 경우 생산형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설비 구입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10) 지방정부에 의한 조세감면

- ☐ 중국의 지방정부는 당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이 납부한 기업소득세 중 당해 지방에 분리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감면징수를 결정할 수 있음(新 기업소득세법 제29조).

〈표 II-20〉 기업소득세법 개정 전후 지방정부에 의한 조세감면 비교

세법 개정 이전	세법 개정 이후
3%의 지방세는 대부분 지방정부에 의해 감면됨.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당해 민족자치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이 납부한 기업소득세 중 지방에 분리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감면징수를 결정할 수 있음.

나.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세법 개정 이전에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특구 등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설립된 외자기업에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 왔지만, 세법 개정으로 특정 지역(특히, 연해지역) 위주의 우대정책은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됐고, 내·외자기업 간의 차별 역시 폐지됨.
 -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내의 기업은 국무원이 정한 경과규정에 따라 세법 개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간감면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新 기업소득세법 §57).
 - 또한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당해 민족자치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이 납부한 기업소득세 중 지방에 분리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감면징수를 결정할 수 있고(新 기업소득세법 제29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국무원이 기업소득세 특별항목 우대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바(新 기업소득세법 제36조), 지방정부 또는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기존의 세금감면 혜택이 부분적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는 중서부지역에 대한 세수특혜는 세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세법 개정 이전에 특정 지역에 설립된 외자기업에 적용되던 세금감면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SEZs)
 - 경제특구에 소재하는 외자기업은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기간감면, 100% 재투자세금 환급, 관세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21〉 중국의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항목		tax incentive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 15% 세율 - 생산성 기업 - 금융기관이고,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며,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
	기간감면	• 이익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이후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海南경제특구에 설립됐고, SOC 또는 농업개발 사업을 영위하며,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기업 • 이익발생연도부터 1년간 소득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소득세 50% 감면 -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이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 - 금융기관이고,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
	재투자세금 환급	• 100% 재투자세금 환급 - 海南경제특구 내의 기업에서 얻은 이윤을 직접 海南경제특구 내의 SOC기업과 농업개발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관세면제		• 수출되는 재화: 전부 면제 • 수입되는 재화: 전부 또는 일부 면제

2) 경제기술개발구(Economic and Technology Development Zones: ETDZs)

☐ 경제기술개발구에 소재하는 외자기업은 15% 또는 24%의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표 II-22〉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지역	세목	tax incentive
경제기술개발구	기업소득세	• 15% 세율 - 생산성기업
경제특구 · 경제기술개발구의 (舊)시가지지역	기업소득세	• 15% 세율 - 기술집약 · 지식집약 업종 -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업종 - 에너지 · 교통 · 항구건설업 • 24% 세율 - 생산성기업

3) 연해경제개방구(Open Coastal Economic Zones: OCEZs)

□ 연해경제개방구에 소재하는 외자기업은 15% 또는 24%의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표 II-23〉 중국의 연해경제개방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항목	tax incentive
기업소득세	• 15% 세율 - 기술집약 · 지식집약 업종 -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업종 - 에너지 · 교통 · 항구건설업 • 24% 세율 - 생산성기업

4) 上海-浦東 신구

□ 上海-浦東 신구에 소재하는 외자기업은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기간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24〉 上海-浦東 신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항목		tax incentive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 15% 세율 - 생산성기업 - 에너지 · 교통 · 통신건설업
	기간감면	• 이익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이후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에너지 · 교통건설업을 영위하고,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기업

5) 첨단기술개발구(New-Technology Development Zones: NTDZs)

- ☐ 첨단기술개발구에 소재하는 외자기업은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기간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25〉 중국의 첨단기술개발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항목		tax incentive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 15% 세율: 첨단기술기업
	기간감면	•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간 소득세 100% 면제 - 첨단기술기업이고,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

6)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s) 또는 보세지역(Bonded Zones)

- ☐ 자유무역지역을 통과하는 재화는 수입 허가와 관세가 면제되며, 지역별로 서로 다른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바, 外高橋(Waigaoqiao) 자유보세지역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²⁵⁾.

25)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http://www.ibfd.org/Asia-Pacific/Taxation%20&%20Investment%20Database)

〈표 II-26〉 外高橋(Waigaoqiao) 자유보세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항목	tax incentive
기업소득세	• 15%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면제 •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기업 또는 가공기업: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 100% 면제, 이후 3년간 기업소득세 50% 감면
증치세 및 관세	• 제조·가공·공공물류기업의 설비·자재·시설 수입: 증치세 및 수입관세 면제

7) 가공수출제품구(Zones for Processing Export Products: PEPZ)²⁶⁾

□ 가공수출제품구에 소재하는 외자기업은 증치세 면제 또는 매입세액 공제, 소비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표 II-27〉 중국의 가공수출제품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항목	tax incentive
증치세 · 소비세	• 수출제품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원자재, 예비부품, 포장자재설비, 기계장치, 건물 자재 등: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¹⁾ • 가공수출제품구 소재 기업 간에 생산자재거래: 증치세 및 소비세 면제

주: 1) 가공수출제품구 밖에서 반입되는 재화(종업원 및 운송장비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되는 재화 제외)가 수출 제품 가공에 사용되고, 모든 가공제품이 수출돼야 함.

8) 天津신경제구²⁷⁾

□ 天津신경제구에 소재하는 외자기업의 경우 15%의 감면세율이 적용되며,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하여 가속상각이 가능함.

26)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

27)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

9) 중서부지역

- 중서부지역의 장려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내·외자기업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함²⁸⁾.
- 또한 허가·제한항목에 해당하고, “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에 속한 경우에는 장려항목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향유할 수 있음²⁹⁾.

다. 특정 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중국 정부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기업, 수출지향기업, SOC기업, 첨단기술기업, 대형 금융기관 등과 같이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외자기업에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어 왔으나, 세법 개정으로 내·외자기업 간에 차별이 폐지되고, 조세특례 대상 업종이 축소됐음.
- 선진기술기업이나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은 세법 개정 이후에도 세수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가 낮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며, 환경오염이 심한 제조 기업은 경제특구 등에 위치하더라도 세수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 세법 개정으로 첨단기술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15%의 특혜세율을 적용받게 됐지만,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은 이전보다 크게 강화됐음.
 - 공항·항구·철도·도로·발전소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및 농업·임업·수리업·어업 등과 같은 주요 산업에 관한 세수우대 혜택은 세법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나, 내자기업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됨.
 - 생산성기업이나 수출지향기업 등에 관한 세수우대 혜택은 세법 개정으로 폐지됨.

28) http://www.koreaexim.go.kr/kr/file/nation/070418_oeis_Chinafdiincentive.pdf

29) <http://www.koreanembassy.cn/contents/economy/serv3-32.aspx?id=1826&bm=3&sm=3&fm=2>

- 15%의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³⁰⁾.
 - 핵심적이고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해야 함.
 - 상품 또는 서비스가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 영역」³¹⁾에 해당해야 함.
 - 연구개발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 비율 이상 되어야 함.
 - 기업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상품 또는 서비스 수입 비율이 규정 비율 이상 되어야 함.
 - 과학기술인력이 기업의 직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 비율 이상 되어야 함.
 - 「첨단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에서 정한 기타 조건

- 新 기업소득세법은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기존에 외자기업에 적용되던 조세우대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이 중 일부는 경과규정에 의해 세법 개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며(新 기업소득세법 §57), 국무원의 결정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부활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30) 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3조

31)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 영역」과 「첨단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은 국무원 과학기술, 재정 및 세무 주관 부문이 관련 부문과 협의하여 공동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함.

〈표 II-28〉 新 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항 목	해당 업종
소득세 면제·감면 (新 기업소득세법 §27)	• 기업이 농업·임업·축산업·어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기업 소득세의 100% 또는 50% 감면¹⁾ •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항만, 부두, 공항, 철도, 도로, 전력 및 수리 등)에 투자·경영하여 취득한 소득: 처음으로 생산경영수입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기업소득세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절수사업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 처음으로 생산경영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기업소득세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 거주자기업이 기술소유권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500만 원 이하 이면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50% 감면
15% 세율 적용 (新 기업소득세법 §28)	첨단기술기업
수입금액 공제 (新 기업소득세법 §33)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산업정책규정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취득한 수입금액 ²⁾ 의 90% 공제

주: 1) ① 기업소득세 100% 면제: 야채·곡물·서류·유과·두류·면화·마류·당과·과일·견과류의 재배, 농작물의 신품종 재배, 중약재의 재배, 임목의 재배, 목축 및 가금류의 사육, 임산품의 채집, 관개 및 농산품의 초기 가공·수의 등 농림목어업 관련 서비스업, 원양어업
 ② 기업소득세의 50% 감면: 화분·차 및 기타 음료 작물과 향료 작물의 재배, 해수양식 및 내륙양식

2) 기업이 「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목록」에서 정한 자원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으며, 국가와 업계의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얻은 수입을 말함. 전항에서 규정한 원재료가 상품을 생산하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목록」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됨.

1) 생산성기업

□ 생산성기업이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하며, 호텔, 식당, 관광, 법률 서비스, 은행,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생산성기업에서 제외됨(舊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 §72).

○ 기계제조, 전자공업, 에너지공업(석유·천연가스 등 자원채굴 제외), 야금(冶金), 화학, 건재공업, 경공업, 방직, 포장공업, 의료기계, 제약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수리업, 건축업, 교통운수업(여객운수 제외), 직접 생산서비스를 위한 과학기술 개발, 지질조사, 산업정보자문, 생산설비·정밀계기수리업

○ 국무원 세무 주관부서에서 정한 기타 사업

□ 생산성기업은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기간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29〉 중국의 생산성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항 목		tax incentive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 15% 세율 -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上海-浦東신구 • 24% 세율 - 연해경제개방구, 경제특구 · 경제기술개발구의 (舊)시가지
	기간감면	•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간 소득세 100% 면제, 이후 3년간 소득세 50% 감면: 영업기간 10년 이상

2) 수출지향기업

□ 수출지향기업이란 특정 사업연도의 수출품 총생산액이 총제품생산액의 70% 이상 되는 기업(舊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 §72)을 말하며,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기간감면, 100% 재투자세금 환급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30〉 중국의 수출지향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항 목		tax incentive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 10% 세율 - 원래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감면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출지향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감면	• 기업소득세 50% 감면 - 감면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출지향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재투자세금 환급	• 재투자세금 100% 환급

3) 첨단기술기업

□ 요건³²⁾

- 세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 과세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일반적으로 첨단기술기업이란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이나 수출대체를 목적으로 신제품의 개발·개량, 기존 제품의 대체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외국인투자자가 제공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함.
 -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은 지방정부가 정하는바, 일반적으로 선진기술·장치를 사용하고, 신제품을 도입하며, 합작투자계약에 기술이전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수입 기계장치가 성능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국에서 만든 것보다 우수하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함.

□ 첨단기술기업은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기간감면, 100% 재투자세금환급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31〉 중국의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항 목		tax incentive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 기술집약·지식집약 업종 - 연해경제개발구: 15% - 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의 (舊)시가지: 15% • 첨단기술기업 - 첨단기술개발구: 15%
	기간감면	• 기업소득세의 50% 감면 - 감면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투자세금 환급	• 선진기술기업 - 재투자세금 100% 환급

32)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

4) 농수산업 등

- ☐ 농수산업 등을 영위하는 외자기업은 기간감면, 100% 재투자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32〉 중국의 농수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항 목		tax incentive
기업소득세	기간감면	• 감면기간 이후 10년간 납부세액의 15~30% 감면 - 농업·임업·목축업 영위 • 이익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이후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海南경제특구에 설립됐고, 농업개발사업을 영위하며,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기업
	재투자세금 환급	• 재투자세금 100% 환급 - 海南경제특구 내의 기업에서 얻은 이윤을 직접 海南경제특구 내의 농업개발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5) 서비스업

-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자기업으로 경제특구에 설립됐고,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이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은 이익발생연도부터 1년간 소득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 SOC기업

- ☐ SOC 사업을 영위하는 외자기업은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기간감면, 100% 재투자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33〉 중국의 SOC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항 목		tax incentive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 15% 세율 - 연해경제개방구, 上海-浦東신구 - 경제특구 · 경제기술개발구의 (舊)시가지 - 항구 · 부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외합자 경영기업
	기간감면	• 이익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이후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海南경제특구에 설립됐고, SOC 사업을 영위하며,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기업 - 上海-浦東신구에 설립됐고, 에너지 · 교통건설업을 영위하며,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기업 -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항구 · 부두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외합자 경영기업
	재투자세금 환급	• 재투자세금 100% 환급 - 海南경제특구 내의 기업에서 얻은 이윤을 직접 海南경제특구 내의 SOC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7) 금융업

□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자기업은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기간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34〉 중국의 금융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항 목		tax incentive
기업소득세	세율감면	• 15% 세율 - 경제특구에 설립됐고,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며,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
	기간감면	• 이익발생연도부터 1년간 소득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소득세 50% 감면 - 경제특구에 설립됐고,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

8) 소프트웨어(S/W) 및 전자회로(IC) 산업³³⁾

□ 소프트웨어 및 전자회로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표 II-35〉 중국의 소프트웨어(S/W) 및 전자회로(IC)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업종	세목	tax incentive
S/W기업	직접세	-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간 소득세 면제, 이후 3년간 소득세의 50% 감면¹⁾ - 기간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국가발전위원회가 핵심기업으로 승인한 경우: 10% 세율 적용
	간접세	- 자체개발 S/W를 판매하는 일반과세자: 2009년까지 17%의 증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 후 실제 증치세 납부세액이 매출액의 3%를 초과하면 증치세 환급(다만, 증치세 환급액은 신제품 개발과 기업 확장에 사용해야 함) - 자체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관세 및 증치세 면제(면세불가항목 제외, 부속 S/W · 예비부품 · 부속품 포함)
IC기업	직접세	- IC의 크기가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투자금액이 8조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에너지 · SOC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세금감면혜택 부여 - 생산용 기계장치: 3년에 걸쳐 조기상각 가능
	간접세	- 자체개발 IC를 판매하는 일반과세자: 2009년까지 17%의 증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 후 실제 증치세 납부세액이 매출액의 6%를 초과하면 증치세 환급(다만, 증치세 환급액은 신제품 개발과 생산설비 확장에 사용해야 함) - 관세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IC기업의 원재료 및 특정 생산자재 수입: 수입관세 및 증치세 면제²⁾ -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IC의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해외에서 생산 후 중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저율의 관세 적용 - IC 크기가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투자금액이 8백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002년 7월 1일부터 생산자재 수입에 대해 수입 관세 및 증치세 면제³⁾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을 자본금 증가 또는 IC 기업의 설립자본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금액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의 40%(서부지역의 경우 80%) 환급

주: 1) 다만, 이전에 tax holiday 혜택을 향유했던 외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2) 면세품목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대외경제무역협작부, 관세청의 규정에 따름.

3) 면세품목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매해 개정됨.

33)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

9) TFT-LCD 모니터 제조기업³⁴⁾

□ 세금감면 혜택

- TFT-LCD 모니터 제조기업의 생산설비: 3년에 걸쳐 조기상각이 가능함.
-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생산설비의 자재·부품·부속품·예비부품 수입: 2003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세가 면제됨.

10) R&D 개발센터의 유치³⁵⁾

- 첨단기술의 획득을 위해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관한 통지’등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설비 및 관련 기술, 실험실 또는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부품, 자체 자금으로 기술개량을 위해 수입하는 연구개발설비와 기업 설립시의 계약서에 의해 수입하는 설비 및 그에 따른 기술·부품, 계약서에 따라 국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비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표 II-36〉 R&D 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중국의 조세감면 혜택

항목		tax incentive
중앙 정부	관세	• 외국인 개발센터에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개인용으로 휴대하는 카메라, 캠코더, 비디오레코드, 컴퓨터, 도서자료, 과학기기, 공구, 샘플, 시료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 면제
	영업세	• 자체개발 기술의 임대에서 발생한 수입: 영업세 면제
	소득세	•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50% 공제
지방정부		• 지방정부별로 우대규정을 제정하고, 외자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장려하고 있음 ¹⁾ .

주: 1) 北京의 경우 ‘과학연구개발센터 설립지원 규정’을 통해 인재유치, 토지사용,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하고 있음.

34)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

35) 탁세령(2006) p. 7.

라. 개인소득세³⁶⁾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3,200元 상당의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주택 및 자녀교육비 보조금 등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음.

마. 기타 세금 공제³⁷⁾

☐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 투자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 농업세, 기타 세금이 면제됨.

- 이렇게 면제되는 세금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세수 목적으로 지방과세당국이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발간되는 투자유인물에 언급되어 있음.

바. 투자금액 요건

☐ 서비스기업, 금융기관, S/W기업 그리고 IC기업은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해야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사. 감면세액 추징

☐ 세법 개정 이전에는 영업기간 또는 재투자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됐음.

36)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http://www.ibfd.org/Asia-Pacific%20Taxation%20&%20Investment%20Database)

37)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http://www.ibfd.org/Asia-Pacific%20Taxation%20&%20Investment%20Database)

〈표 II-37〉 기업소득세법 개정 전후 감면세액 추정사유 비교

세법개정 이전	세법개정 이후
• 영업기간 요건 -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제 영업기간이 규정 연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다만, 자연재해, 의외의 사고로 인한 중대한 손실 제외) • 재투자기간 요건 - 재투자세금을 40% 환급받은 투자자가 5년 내에 재투자를 철회하는 경우 - 재투자세금을 100% 환급받은 투자자가 직접 재투자하여 운영·확장한 기업이 생산·경영 후 3년 내에 수출지향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영업기간 요건: tax holiday 규정이 예정대로 폐지되면 영업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감면세액 추정규정 역시 따라서 폐지 • 재투자기간 요건: 재투자세금 환급규정이 예정대로 폐지되면 재투자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감면세액 추정규정 역시 따라서 폐지

아.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³⁸⁾이 외국으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면제되었으나, 200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자. 최근 중국의 세법개정 방향과 이로 인한 효과³⁹⁾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의 축소와 단순화

□ 최근 들어 투자과잉, 환경오염,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등 외자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축소하고 있음.

○ 특히 기업소득세법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평균 기업소득세율이 15%에서 25%로 증가했고, “兩免三減半”으로 대표되는 대부분의 세수우대정책 역시 폐지됐음.

38) 일반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 되는 법인을 말함.

39) Wang(2007) p. 101~103.

□ 조세감면 혜택의 축소와 더불어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가 단순화되고 있음.

- 이전에는 조세우대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주주구성, 설립지역, 업종, 운영기간, 투자금액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기업소득세법 개정으로 주주구성이나 운영기간, 투자금액 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됐고,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설립지역이나 업종 역시 대폭 축소되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크게 단순화됐음.

2) 지역별 우대정책에서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

□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에 불균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특구 등에 대한 조세우대 혜택은 축소하는 대신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강화함.

- 자원과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오염을 막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생산성기업이나 수출지향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우대 혜택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첨단기술기업은 지역 또는 감면기간에 관계없이 15%의 특혜세율을 적용함.
- 즉, 과거에는 특별한 제약 없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던 ‘양적 성장 투자유치 전략’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질적 성장 투자유치’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음.

3) 연해지역 중심의 세수우대정책에서 내륙지역 중심의 세수우대정책으로 변화

□ 연해지역 중심의 조세우대 혜택은 폐지하는 대신 낙후되어 있는 서부지역에 대한 조세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함.

- 1999년 이후 중국 정부는 서부지역 개발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음.
- 서부지역의 투자환경은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풍부한 자연자원, 잠재적인 시장 수요 등으로 인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부 연안지역에 비해 많이 뒤처지며, 소규모 기업 설립과 숙련공의 조달에 어려움이 존재함.

4) 외국인직접투자 자본구성의 변화

□ 선진국 자본보다 화교 자본이 세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화교 자본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고, 중간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졌으며, 노동 집약적이고, 낮은 임금과 단기적인 이익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세혜택이 폐지되면 베트남과 같이 과거 중국과 유사한 지역으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음.
- 이와 반대로 선진국 자본은 선진기술과 우수한 기술능력을 갖췄으며, 규모가 크고, 지역적인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환경과 장기적인 이익 예상, 자사의 국제적인 사업 확장 전략에 기초해서 최초 투자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세수우대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업소득세법의 통합으로 가짜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 국내투자자들은 외국으로 나가 조세회피지역에 명목 기업(paper company)을 설립한 후 해외직접투자로 위장해서 중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세법 개정 이후에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에 동일한 세수우대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짜 외국인직접투자가 필요 없어짐.

5) 조세회피규정의 강화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이용하는 기존의 과세체계와는 달리 새로운 과세체계는 중국에 실체를 두고 있는 납세자로부터 조세 수입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소득의 원천 및 주민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기업의 판정에 실질적인 관리장소라는 개념을 도입함.
- 특별납세조정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사업목적 없이 기타 합의를 실시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과소자본세제와 조세피난처에 대한 간주배당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

- 관련기업과의 거래보고표 제출 의무화, 이전가격 조사에 있어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이전가격에 대한 규제 역시 한층 강화됨.

2.2.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 1978년 대외개방 이후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최근에는 세계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함.
- UNCTAD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05년 724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영국(1,645억달러), 미국(994.4억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함⁴⁰⁾.
-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수출,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표 II-38〉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만달러)

국가/지역	1990~2000 연평균	2002	2003	2004	2005
중국	30,104	52,743	53,505	60,630	72,406
싱가포르	9,204	7,338	10,376	14,820	20,083
미국	109,513	74,457	53,146	122,377	99,443
동아시아	48,777	67,350	72,174	105,074	118,192
아시아·오세아니아	76,616	96,244	110,489	157,328	199,951
개발도상국	134,670	163,583	175,138	275,032	334,285
전세계	495,391	617,732	557,869	710,755	916,277

자료: UNCTAD(2007)

40) 중앙일보(2006. 10. 16.)

□ 주요 투자국가 및 투자업종⁴¹⁾

○ 주요 투자국가

- 화교 자본(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과 선진국 자본(미국, 일본, 유럽 등), 조세회피지역(버진군도, 케이만군도, 사모아 등)을 통한 자본,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 화교 자본은 수출용 조립가공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선진국 자본은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수출용 조립가공 모두에 특화되어 있음.
- 화교 자본의 위상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반면 외자기업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역외금융시장을 통해 재유입 되는 가짜 외자 때문에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자본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II-39〉 중국의 산업별 외국인투자 유치 추이(2004)

(단위: 건, 천달러)

업 종	건 수	금 액
농·림·목·어업	1,130	327
채광업	279	116
제조업	30,386	10,974
전력·석탄·물	455	396
건축업	411	177
교통운수·창고·우편통신	638	237
도·소매·무역·음식업	1,700	250
부동산업	1,767	1,349
사회서비스업	4,628	1,074
위생·체육·사회복지업	80	32
교육·문화·예술·라디오·영화·TV	272	101
기타	1,918	315
합계	43,664	15,348

자료: 탁세령(2006), p. 7.

41) 탁세령(2006), p. 6~9.

〈표 II-40〉 중국의 국가별 외국인투자 유치 추이(2004)

(단위: 억달러, %)

순위	국가	2002년 누계		2005년		2005년 누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홍콩	2,048.8	45.7	179.5	29.8	2,652.6	42.6
2	일본	363.4	8.1	65.3	10.8	533.8	8.6
3	미국	398.9	8.9	30.6	5.1	510.9	8.2
4	버진군도	243.9	5.4	90.2	15.0	459.2	7.4
5	대만	331.1	7.4	21.5	3.6	417.6	6.7
6	한국	152.0	3.4	51.7	8.6	311.0	5.0
7	싱가포르	214.7	4.8	22.0	3.7	277.4	4.5
8	영국	107.0	2.4	9.7	1.6	132.0	2.1
9	독일	79.9	1.8	15.3	2.5	114.4	1.8
10	케이만군도	38.0	0.9	19.5	3.2	86.6	1.4
11	프랑스	55.4	1.2	6.2	1.0	74.2	1.2
12	사모아	23.2	0.5	13.5	2.2	57.9	0.9
총액		4,479.6	100	603.3	100	6,224.3	100

자료: 탁세령(2006), p. 8.

○ 주요 투자업종

-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준 완화 이후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교통 및 운송설비 등 물류인프라 사업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동안 중국의 낙후된 물류 인프라는 중국 내수시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음.
- 이 밖에 R&D 투자 역시 크게 증가해 다국적기업의 연구시설이 최근 700개를 넘어섰음
- R&D 투자는 전자·기계·의약·화학제품·자동차 부품 등 신기술과 관련된 연구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3. 싱가포르

3.1. 조세지원제도 42)

가. 개요

-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며, 특정 지역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R&D허브 및 금융허브의 육성과 지역운영본부(Headquarter)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해외소득에 대해 광범위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One-Tier 시스템의 적용으로 거주자기업이 지급하는 모든 배당에 대해 모든 수준의 주주 입장에서 세금이 면제됨.
-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법인세율 인하와 상품 및 서비스세 인상
 - 2008년부터 법인세율이 현행 20%에서 2%포인트 인하되어 18%의 세율이 적용되며, partial tax exemption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역시 10만싱가포르달러에서 30만싱가포르달러로 인상
 -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싱가포르는 주요 경쟁상대국으로 분류되는 홍콩(법인세율: 17.5%)과 거의 유사한 법인세율을 갖게 되었으며, 법인세 납부대상기업 중 80% 이상이 10% 이하의 유효법인세율을 갖게 됨.
 - 싱가포르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입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이하 'GST')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했음⁴³⁾.

42) 별도의 주석표기가 없는 한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함.

43) 외교통상부(2007)

□ 맞춤형 조세제도

-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조세특례규정들은 주로 경제확장인센티브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이하 ‘EEIA’)과 소득세법(Income Tax Act: 이하 ‘ITA’)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세법에는 투자인센티브별로 포괄적인 한도만이 규정되어 있고, 감면기간이나 감면기간의 개시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외국인투자자와 싱가포르 정부 간에 협상을 통해 결정됨.
 - EEIA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장관은 싱가포르의 경제적 요구에 적합한 규모만큼 싱가포르에서 수행되고 있지 못한 산업 및 싱가포르의 발전에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산업을 개척자기업으로 지정하고, 5~10년 동안 기간감면 혜택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싱가포르의 발전에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세법에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면기간 역시 5~10년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기간감면 규정이 승인증서에 기재된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관기간이 감면기간의 개시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척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업무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 이하 ‘EDB’)에서 주관하고 있음.
 - EDB는 투자유치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발전 계획까지 수립하는 기관으로 대상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연구한 후, 해당 기업에 먼저 접촉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기획 유치’를 실시하고 있음.
 - 법률이 아니라 EDB 또는 산하기관의 자체 지침에 따라 투자 지원 결정이 이뤄지며,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EDB가 비공개로 지원 폭을 결정함.
 - 인센티브 신청 요건을 만족한다 하여 자동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자국 내의 경제적인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함.
 - 인센티브의 수혜 여부, 수혜범위, 기간 등은 EDB의 산업담당관들이 작성한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

〈표 II-41〉 싱가포르의 tax incentive 제도와 담당기관 예시

근거법률	인센티브 규정	해당기관
ITA/S14B	승인받은 무역박람회 · 전시회 · 사절단비용 또는 해외무역사무소 유지비용	IE Singapore
ITA/S14E	R&D 비용 추가공제	EDB
ITA/S43A	승인받은 ACU, 펀드매니저, 증권회사에 대한 세율감면	MAS
ITA/S43C	승인받은 역외리스크의 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세율감면	MAS
ITA/S43E	승인받은 운영총괄본부에 대한 세율감면	EDB/MAS
ITA/S43G	승인받은 금융재정센터에 대한 세율감면	MAS
EEIA/Part II	개척자기업	EDB
EEIA/Part III	개척자서비스기업	EDB
EEIA/Part III B	발전 및 확장기업	EDB
EEIA/Part X	투자공제	EDB
EEIA/Part X III	신규기술기업 투자	EDB
EEIA/Part X III B	신규해외기업	IE Singapore

자료: UHY(2006), p. 12.

1) 세율

가) 법인

- 2008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어 18%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나, 부분적인 세금면제(Partial Tax Exemption) 규정 때문에 실제 유효세율은 이보다 낮음.

〈표 II-42〉 싱가포르의 법인소득세율

구분	2007 과세연도까지	2008 과세연도부터
세율	20%	18%(2% 포인트 인하)
부분적인 세금면제 ¹⁾	- 일반적인 경우 - SGD10,000까지: 75%면제 - SGD10,000~SGD100,000: 50% 면제 - 신규 창업기업²⁾ - SGD100,000까지: 100% 면제	- 일반적인 경우 - SGD10,000까지: 75%면제 - SGD10,000~SGD300,000: : 50% 면제 - 신규 창업기업²⁾ - SGD10,000까지: 100%면제 - SGD10,000~SGD300,000: 50% 면제

주: 1) 싱가포르에서 얻은 배당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설립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부분적인 세금면제가 가능함.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www.iras.gov.sg)

나) 개인

□ 개인의 경우 0~20%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표 II-43〉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율

(단위: SGD, %)

과세소득	한계세율
~ 20,000	0
20,000 ~ 30,000	3.5
30,000 ~ 40,000	5.5
40,000 ~ 80,000	8.5
80,000 ~ 160,000	14
160,000 ~ 320,000	17
~ 320,000	20

2) 세율감면

가) 발전 및 확장기업(Development and Expansion Company)

□ 요건

- 1997년 이전에 개척자 지위를 얻은 기업과 개척자 지위를 얻지 못했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사후개척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사실상 대체한 것임⁴⁴⁾.
- 발전 및 확장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종사해야 함.
 - 싱가포르에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제품의 생산 또는 생산량 증가
 - 엔지니어링 또는 기술 서비스(실험 · 자문 · 연구개발 활동 포함)
 - 컴퓨터 기반 정보 서비스 및 기타 컴퓨터 관련 서비스
 - 산업디자인의 개발 · 생산
 - 기타 서비스 또는 활동

44) 사후개척자기업(post-pioneer company)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1997년 폐지됐음.

□ 세금감면 혜택

- 발전 및 확장기업의 확장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20년까지 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됨.
- 감면기간: 보통 10년이나 5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 감면대상소득금액: 확장소득금액-감면개시일 직전 3년간의 연평균소득금액

나) 승인받은 예술품 및 골동품 거래(Approved Art and Antique Dealer)

- 비거주자를 위한 승인받은 예술품 및 골동품 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됨.

다) 사이버거래(Cyber Trading)

□ 요건

- 싱가포르에서 설립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해야 함.
- 싱가포르에서 1백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함.
- 싱가포르에 기초한 3명 이상의 주요 임직원을 보유해야 함.
-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을 거래해야 함.
- 싱가포르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함.
- 최소한 한 단계 이상의 거래가 비거주자와 이루어져야 함.

□ 세금감면 혜택

- 요건을 충족하는 싱가포르 국외 회사와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증분이익에 대해서는 5년 동안 10%의 세율이 적용됨.
-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 또는 물리적인 거래에서 얻은 이익이나 수수료
-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고 얻은 수수료
- 사용료 및 라이선스 수수료

라) 운영총괄본부(Operational Headquarter)

- 운영총괄본부가 얻은 경영수수료 및 기타 지역본부 관련 소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5~10년 동안 10%의 세율이 적용됨⁴⁵⁾.

마) 금융기관의 역외소득

- 금융업의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10% 또는 5%(대규모 거래의 경우)의 감면세율이 적용됨.

〈표 II-44〉 금융업의 역외소득에 대한 싱가포르의 세율감면 규정

항목	조세지원 내용
ACU ¹⁾	일정한 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10%(대규모 거래: 5%)의 세율이 적용됨.
증권거래	승인받은 증권회사(Approved Securities Company: 이하 'ASC')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대규모 증권의 매매·인수·관리 또는 사모를 통해 얻은 요건을 충족하는 증분소득에 대해서는 5년 동안 5%의 세율이 적용되며, 감면기간의 연장 역시 가능함.
펀드관리	승인받은 펀드매니저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역외펀드 및 비(非)싱가포르 자산 펀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수수료(외국인투자자와 다른 ACU·ASC·비거주자 간에 외국증권의 대여·대출 알선업무를 제공하고 얻은 수수료 포함)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5백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의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매니저가 얻은 증분이익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됨.
역외리스크의 보험·재보험	보험회사가 역외생명보험사업 ²⁾ , 역외리스크 ³⁾ 의 보험·재보험사업에서 얻은 소득(할증금·배당·이자 이외의 소득 제외)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10%의 세율이 적용됨.

주: 1) ACU(Asian Currency Unit: 이하 'ACU')란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아시안달러의 수취 및 대출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을 말함. 아시안달러거래는 싱가포르 소재 은행의 ACU 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한 거래는 정부의 외환규제를 받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거래 구분은 국내금융시장과 국제자본시장의 병행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금융시장을 육성함에 있음.

2) 역외생명보험사업이란 보험증권의 발행일 현재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증권의 소유자에게 직접·임의·특약생명보험증권에 따른 책임을 보험·재보험하는 업무를 말함.

-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이 아닌 자
- 싱가포르에 주소가 없는 자

3) 역외리스크란 피보험자가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이 아닌 직접·임의보험, 총할증금을 고려했을 때 전체 위험의 75% 이상이 외국에 있는 특약보험(싱가포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외국 위험으로 간주한다)과 관련된 싱가포르 국외의 위험을 말함.

45) “나. 3) 운영총괄본부” 참조

〈표 II-44〉의 계속

항목	조세지원 내용
역외 금, 선물 거래, 현물거래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선물회원이 승인받은 시장 또는 거래소에서 금융기관의 ACU 등과 금피·상품·금융선물(원유선물 포함)을 거래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됨.
금융재정센터	• 승인받은 싱가포르 국외의 자회사·관계회사·사무소·제휴회사를 위해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얻은 특정 소득(싱가포르 원천 이자·배당소득 제외), 승인받은 해외투자에서 얻은 배당소득으로 승인서한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5~10년 동안 세금이 면제됨. • 싱가포르 국외의 자회사·관계회사·사무소·제휴회사에 요건을 충족하는 FTC 서비스¹⁾를 제공하고 얻은 순소득²⁾, 요건을 충족하는 FTC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정한 자와의 거래에서 얻은 외화소득에 대해서는 5~10년 동안 10%의 세율이 적용됨.
승인받은 벤처캐피털	승인받은 투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년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5년의 추가적인 기간연장이 가능함.
신용평가기관	일정한 요건 ³⁾ 을 충족하면 최초 5년 동안 10%의 세율이 적용됨.
승인받은 신탁회사	승인받은 신탁회사 ⁴⁾ 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됨.
상품선물거래소의 회원	상품선물거래소의 회원이 얻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됨. • 싱가포르 상품거래소, 특정 거래소 또는 시장에서 행해지는 금융기관의 ACU, 싱가포르 상품거래소의 다른 회원, 싱가포르의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이 아닌 자, 거주자 기업의 싱가포르 국외 지점과의 상품선물거래 또는 특정 상품에 관한 외국환거래에서 얻은 거래이익 및 수수료 • 싱가포르 상품거래소, 특정 거래소 또는 시장에서 행해지는 상품선물거래에서 얻은 이익으로 회사가 가진 예금에서 얻은 이자소득

주: 1) 지역·국제적인 재정관리서비스 및 자금관리서비스, 네트워크 기업의 잉여자금 또는 싱가포르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대출, 기업금융·자문서비스, 금융·경제·투자와 관련된 조사·분석, 대출통제·관리, 경영·관리·사업계획 등

2) FTC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수령자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하 'MAS')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10년 이상 국제적인 신용평가실적, 싱가포르에서 2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분석가 고용, 싱가포르에서 매년 50만싱가포르달러 이상 사업비용 지출

4) 신탁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 또는 싱가포르 국외에 설립된 비거주자 기업의 싱가포르 지점으로 신탁·보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

바) 승인받은 국제거래회사(Approved Global Trading Company)

- 승인받은 국제거래회사⁴⁶⁾가 에너지 상품·제품, 농업상품 및 대량의 식용제품, 건물 및 산업자재, 소비재, 산업재, 기계부품, 광물, 전기·전자제품의 물리적인 거래 및 파생거래에서 얻은 요건을 충족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5년 동안 5% 또는 10%의 세율이 적용됨.

3) 기간감면

가) 개척자기업(Pioneer Company): 제조업

- EEIA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장관은 싱가포르의 경제적 요구에 적합한 규모만큼 싱가포르에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 또는 싱가포르의 발전에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개척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싱가포르의 발전에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EDB가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전에는 투자금액이 1백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해야 개척자 지위를 얻을 수 있었으나, 동 요건은 폐지됨.
- EDB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척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제품의 유형, 투자금액, 기술수준 등(일반적으로 EDB는 싱가포르에 상업적으로 유용하다 판단되는 제조 기업에 개척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아직 싱가포르에서 제조되고 있지 않은 항목에 투자해야 함.
 - 전문적인 사업, 신제품·첨단기술제품 제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개척자 지위를 얻을 수 있음.
 - 첨단기술이 사용되지 않는 전통적인 산업이라 하더라도 싱가포르에 잘 소개되어

46) 열거한 상품·제품의 국제적인 거래·구매·유통·운송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선두기업

있지 않고, 신청기업이 산업 리더에 해당하면 개척자 지위를 얻을 수 있음.

〈표 II-45〉 싱가포르의 개척자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

구분	내 용
기간감면	• 생산일¹⁾로부터 5~10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됨. - 최초 감면기간이 10년 이하로서 처음 개척자 지위를 획득했을 때의 속성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추가적인 기간 연장이 가능함. - 선진기술이나 회수기간이 긴 항목에 투자하는 경우,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감면이 가능함. - 2004년 2월 27일부터 신규전략 개척자사업에 투자하고 EDB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5년까지 감면이 가능함.
의제상각 ²⁾ 의 예외인정	• 다음과 같은 경우(고정자산 투자금액이 10억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고, 1991년 8월 16일 이후 발생한 자본적 지출 제외)에는 감면기간의 종료일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본공제 규정을 적용함. - 고정자산 투자금액이 1억 5천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장관의 서면 인증을 받은 경우 - 싱가포르 거주자가 당해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장관이 싱가포르의 경제·기술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주: 1) 시장에 판매가능한 수량만큼 개척자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날

2)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본공제가 선택사항이나,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소득에서 자본공제액을 차감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해야 함(강제사항).

나) 개척자서비스기업(Pioneer Service Company: 구상무역 포함): 서비스업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개척자서비스기업은 승인일로부터 10년까지 소득세가 면제됨.

○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엔지니어링·기술서비스, 컴퓨터 기반·컴퓨터 관련 서비스, 의료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레저, 레크리에이션, 도소매, 금융업, 사업 컨설팅, 전문직 서비스, 국제거래, 벤처캐피탈, 기타 싱가포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정한 분야 등)를 제공해야 함.

- 전적으로 구상무역에 종사하는 별도의 기업을 설립해야 함.
- 국제거래를 위한 연락장소를 두어야 하며, 일정한 숫자 이상 구상무역 전문가를 고용해야 함.
- 각 거래마다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단계가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이뤄져야 함.

다) 신규해외기업(New Overseas Enterprise)

- ☐ 승인받은 해외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투자 또는 해외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소득세가 면제됨.

라)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 ☐ 승인받은 벤처캐피털⁴⁷⁾이 얻은 소득 중 장관이 정한 것은 10년까지 소득세가 면제됨.

4) 투자소득공제

가)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 자기 회사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공제 규정이, 해외 자회사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통합산업자본공제 규정이 적용됨(〈표 Ⅱ-46〉 참조).

나) 주식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 기술취득 또는 신규 해외시장 진출 목적으로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자, 첨단기술기업의 투자자 등은 〈표 Ⅱ-47〉과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7) 승인받은 투자(회사채, 주식, 이와 관련된 권리 또는 옵션 등 포함)를 하는 것을 전부 또는 주요 사업으로 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

〈표 II-46〉 싱가포르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구분	투자공제(Investment Allowance)	통합산업자본공제(Integrated Industrial Capital Allowance)
공제대상 기업	- 제조·기술·전문적인 엔지니어링 분야 (특히 회수기간이 긴 항목)에 종사하는 계속적인 이익발생 기업 - 자본집약적인 분야, 승인받은 확장·개발·사업다각화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싱가포르에 설립된 거주자기업이 해외 자회사 ¹⁾ 의 제품 제조 또는 생산량 증가, 전문적인 엔지니어링·기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고정적인 자본적 지출 ²⁾ 을 하는 경우
세금감면 혜택	- 일반적인 자본공제 외에 자본적 지출의 100%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함. -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제율은 30%이며, 연구개발용 자산은 100%까지 공제가 가능함.	요건충족일로부터 5년 동안 자본공제가 가능함.
중복적용 배제	개척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N/A
감면세액 추정	3년 내에 장관의 승인 없이 판매·대여·처분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 장관의 승인 없이 판매·대여·처분하는 경우

주: 1) 싱가포르 국외에서 설립된 것으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감면기간동안 지분을 100% 수익적으로 소유해야 함

2) 승인받은 사업을 위해 해외자회사에 제공하는 신규 또는 승인받은 중고 생산성설비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

〈표 II-47〉 싱가포르의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구분	조세지원 혜택
해외기업	승인받은 적격 투자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기술취득 또는 신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신기술을 개발·사용하는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주식처분이나 파산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¹⁾.
첨단기술기업 ²⁾	-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첨단기술기업 주식의 처분이나 파산에서 얻은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하에 소득공제가 가능함. -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발생한 처분손실 또는 파산손실에 한함. -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처분이익이 주식처분손실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함.

주: 1) 싱가포르 시민과 항구적인 거주자, 정부가 최소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기업에 적용되며, 양도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까지 적용되며,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싱가포르에서 설립됐고,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또는 이외의 곳에 상장되어서는 안 됨.
- 납입자본금이 1만싱가포르달러 이상 돼야 함.
- 싱가포르에서 혁신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종사해야 함.
- 사업의 성장성이 높고, 싱가포르에 도입되면 싱가포르의 경제·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장관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승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다) R&D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 일반적인 R&D 공제 규정 외에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활동 개발비용에 관해 이종의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표 II-48〉 싱가포르의 R&D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구분	일반적인 경우	금 융 업
세금 감면 혜택	- 연구개발용 건물은 산업용 건물에 포함시켜 감가상각이 가능함. - 연구개발용 컴퓨터·공장·설비는 가속상각이 가능함.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승인받은 노하우 또는 특허권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5년에 걸쳐 상각이 가능함. - 싱가포르 공장에 대규모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척자기업은 감면기간을 1년 연장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이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금융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5년까지 이종의 소득공제가 가능함¹⁾. - 파생상품 거래(주식·환율·이자율옵션 포함) - 파생상품과 연결된 합성증권·도구의 개발 - 기술적인 컴퓨터거래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 스왑거래(일반적인 스왑프 제외) - 정교한 헤징기술 및 도구를 이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 해외증권에 대한 연구 등
공제 대상 비용	- 자체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하는 R&D 활동에 지출한 비용 중 공장·기계장치·토지·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권리 취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 제외) - 위탁기술개발: 승인받은 연구개발조직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R&D 비용	- 직원훈련비용 - 승인받은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승인받은 직원의 급여(이사의 수수료 제외, 부가급여 포함) - 승인받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귀속되는 법률 비용 - 새로운 금융상품의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승인받은 컨설턴트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

주: 1)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장관은 공제요건이나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라) 기타의 소득공제

□ 이 외에도 무역박람회 등의 참석비용과 해외무역사무소 유지비용, 투자지주회사 등의 관리비용, 해외인재의 채용비용, 선급토지할증금, 그리고 해외투자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표 II-49〉 싱가포르 기타의 소득공제 혜택

구 분	조세감면 혜택
승인받은 무역박람회 · 전시회 · 사절단비용 또는 해외무역사무소 유지비용	- 승인받은 무역박람회 · 전시회 · 사절단 또는 무역촉진활동의 개설 · 유지 · 참가비용, 승인받은 해외무역사무소의 유지비용, 승인받은 마케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장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이중의 소득공제가 가능함. - IE 싱가포르가 관리하고 있고, EEIA에 따른 다른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않아야 함.
투자지주회사 또는 단위형 투자신탁의 관리비용	일정한 제약조건하에 관리비용의 50%를 공제할 수 있음.
해외인재의 재배치 · 채용 비용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중의 소득공제가 가능함.
선급토지할증금(upfront land premium)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위해 산업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¹⁾ , 주택개발위원회 또는 Jurong도시기업에게 지급한 선급토지할증금 ²⁾ 은 리스기간에 걸쳐 공제가 가능함.
해외투자개발비용	승인받은 기업 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승인받은 해외투자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투자개발비용, 승인받은 해외사업개발사무소(승인받은 해외투자를 발굴 · 개시 ·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사무소)의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이중의 소득공제가 가능함.

주: 1)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를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함.

2) 리스기간의 개시시점부터 3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지급되는 리스료의 총액

나. 특정 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 R&D 허브

- 싱가포르 정부는 R&D 허브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서 얻은 사용료 또는 이자소득을 수령연도부터 5번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하면 당해 사용료 또는 이자소득에 대해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표 II-50〉 R&D 허브 구축을 위한 싱가포르의 조세지원제도

구분	내 용
세금감면 혜택	싱가포르 또는 기타 장소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화소득 ¹⁾ 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세금이 면제됨.
요건	- 수령연도부터 5번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송금받은 이익을 전부 싱가포르 또는 기타 장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해야 함. - 송금받은 이익으로 수행한 연구개발에서 나온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상업화해야 함. - 기타 장관이 정한 요건
중복공제 배제	소득세법 §14E에 의한 R&D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함.

주: 1) 당해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사용료 또는 이자소득으로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의 소득에서 직·간접적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

2) 금융허브

-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허브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얻은 일정한 역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또는 세율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이중의 소득공제가 가능함.

3) 운영총괄본부(Operational Headquarter)⁴⁸⁾

- ☐ 금융운영총괄본부는 MAS가, 기타 운영총괄본부는 EDB가 관리하고 있음.
- ☐ EDB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표 II-51〉 운영총괄본부에 대한 EDB의 승인요건

구분	기 준
질적 기준	•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리권한을 갖는 지역연락 센터여야 함(관리권한은 싱가포르에서 행사돼야 함). • 싱가포르 기반 인원에게 숫자와 질 측면에서 상당한 권한이 위임돼야 함. • 지역본부의 기능 중 상당 부분이 싱가포르에서 수행돼야 함. • 상업적인 실체를 가진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양적 기준	• 납입자본금이 50만싱가포르달러 이상 돼야 함. • 연간 2백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함. • 4명 이상의 고위 전문·관리 인력으로 구성돼야 함. • 3가지 이상의 지역본부 유형 활동을 수행해야 함.

- ☐ 운영총괄본부는 소득세 면제, 세율감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등과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8) 다른 나라에 있는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경영 및 기타 지역본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등록되어 있는 실체(다른 나라에 있는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합법적인 지점 포함)

〈표 II-52〉 싱가포르의 운영총괄본부를 위한 조세감면 혜택

항목	주요 내용
소득세 면제	• 승인받은 지역본부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함(특정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국제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함).
감면세율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수수료 및 기타 지역본부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5~10년 동안 10%의 세율을 적용함(정상가격에 기초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 해외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지역본부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원가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수수료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10년 동안 10%의 세율을 적용함. - 싱가포르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대출금의 이자소득 - 지역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제공한 대출금의 이자소득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료에 대해 5~10년 동안 10%의 세율을 적용함. - 싱가포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서 사용료를 받은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 다음과 같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함. - 싱가포르 지역본부가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싱가포르에 지급되는 배당 및 싱가포르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분배되는 배당 - 싱가포르 거주자가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싱가포르 지주회사에 분배되는 배당 - 감면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당 - 승인받은 지역본부가 승인받은 해외투자로부터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배당(이 경우에는 승인서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세금이 면제됨)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 일반적으로 개척자기업 등이 면세소득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은 모든 수준의 주주 입장에서 세금이 면제됨.

☐ One-Tier시스템의 전면 시행으로 2008 과세연도부터 거주자기업이 세후소득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은 모든 수준의 주주 입장에서 세금이 면제됨.

- 법인 단계에서 한 번만 과세가 이뤄지며,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2008년 1월 1일부터 모든 기업이 One-Tier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함.

3.2.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⁴⁹⁾

가.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 외국인직접투자는 싱가포르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외국의 다국적기업은 싱가포르 국가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시장의 규모가 협소하다보니 다국적기업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2005년 기준 총고정자본형성액 중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기여도: 78.9%).
 - 정부 중심의 강력한 외국인투자정책과 유리한 환경조건 때문에 싱가포르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음.
 - UNCTAD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05년 200.8억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세계 제1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중국(2위), 홍콩(5위)에 이어 아시아 3위의 실적임.
 -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투자업종 및 주요 투자국가
 -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금융서비스 및 도소매업이며, 주요 투자국은 서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임.

49) Park(2006) p. 3~9.

〈표 II-53〉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만달러)

국가/지역	1990~2000 연평균	2002	2003	2004	2005
싱가포르	9,204	7,338	10,376	14,820	20,083
중국	30,104	52,743	53,505	60,630	72,406
말레이시아	4,722	3,203	2,473	4,624	3,967
동남아시아	22,161	15,774	19,920	25,666	37,136
아시아·오세아니아	76,616	96,244	110,489	157,328	199,951
개발도상국	134,670	163,583	175,138	275,032	334,285
전 세계	495,391	617,732	557,869	710,755	916,277

자료: UNCTAD(2007)

〈표 II-54〉 싱가포르의 총고정자본형성액 중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기여도

(단위: %)

국가/지역	1990~2000 연평균	2003	2004	2005
싱가포르	36.5	46.5	58.0	78.9
중국	11.3	8.6	8.0	9.2
말레이시아	18.3	10.8	19.1	15.2
동남아시아	13.7	10.6	14.2	18.3
아시아·오세아니아	8.0	7.7	9.4	11.1
개발도상국	8.9	9.3	10.7	12.8
전 세계	7.6	7.3	7.7	9.4

자료: UNCTAD(2007)

〈표 II-55〉 싱가포르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잔액 비율(1970~2003)

(단위: %)

부문	1970	1985	2001	2002	2003
제조업	44.6	47.2	37.2	36.8	37.3
금융서비스	25.2	32.8	35.6	34.0	34.3
도소매업	19.9	13.8	14.9	16.0	15.7
기타	10.3	6.2	12.3	13.2	12.7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www.singstat.gov.sg)

〈표 II-56〉 싱가포르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1970~2003)

(단위: %)

국가/지역	1970	1985	2001	2002	2003
서유럽	34.5	30.4	39.3	40.2	42.6
미국	18.4	26.7	16.7	14.9	15.4
일본	8.2	14.1	13.5	14.1	13.5
기타 아시아	32.6	18.5	9.9	9.7	9.1
기타	6.3	10.3	20.6	21.1	19.4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www.singstat.gov.sg)

나. 재정상태

□ 1985년 이후 대체로 재정흑자를 달성하였으나, 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다소 악화됐음.

○ 1985년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대체로 재정흑자를 달성했고, 1989년부터 1995년까지 7년 연속 재정흑자가 GDP의 10%를 초과하였으나, 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둔화됐고, 이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됐음.

□ 재정수입과 지출구조

○ 200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운영수입이 32.37조싱가포르달러이고 총지출이 33조싱가포르달러여서 0.68조싱가포르달러의 경미한 재정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재정수입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재무부가 발표한 예산자료만으로는 싱가포르의 실제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 예산상의 숫자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기타수입의 중요한 두 가지 원천 즉, 정부의 잉여자금운용수익과 국유토지운용수익의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임⁵⁰⁾.

–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토지(싱가포르 전체 토지의 약 85% 소유)의 임대를 통해 높은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통화청과 싱가포르 투자

50) IMF 역시 이러한 불투명성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힘.

청, 그리고 테마섹을 통해 정부 잉여자금을 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음.

- Asher(2002)는 싱가포르의 재정수입에서 기타수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이러한 기타수입이 싱가포르 정부 전체 수입의 26% 내지 39%에 이른다고 추정하였으나, 200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타수입의 비중은 전체 운영수입의 6.2%에 불과함.
- 운영수입의 구성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가 전체 운영수입의 약 40% 내지 50%에 달하며, GST와 자동차세가 전체 운영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관세는 높은 자유무역 구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음.

〈표 II-57〉 싱가포르 정부의 2007 예산안

(단위: 조싱가포르달러, %)

항목	금액	비중
1. 운영수입	32.37	
법인소득세	8.4	25.95
개인소득세	5.16	15.94
법정위원회기여금	1.36	4.20
재산세	2.09	6.46
관세 및 소비세	1.96	6.05
부가가치세	4.85	14.98
자동차세	1.74	5.38
자동차할당할증금	0.26	0.80
복권당첨 부과세	1.62	5.00
기타 세금	2.83	8.74
기타 수수료	1.94	5.99
기타	0.16	0.49
2. 총지출	33	
운영경비	25.88	78.42
개발경비	7.12	21.58
3. 주요 재정흑자(적자) [1-2]	(0.63)	
4. 특별이전	2.07	
5. 순투자소득	2.02	
6. 전체적인 재정흑자(적자) [3-4+5]	(0.68)	

자료: 싱가포르 재무부(www.mof.gov.sg)

4. 말레이시아

4.1. 조세지원제도⁵¹⁾

가. 개요⁵²⁾

- 말레이시아의 조세제도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는데, 직접세에는 개인 소득세, 법인소득세, 협동조합소득세, 석유소득세, 원천징수세, 부동산양도소득세가 있고, 간접세에는 판매세, 서비스세, 소비세, 연예세, 인지세, 도로세, 관세, 각종 부과세가 있음⁵³⁾.
-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은행·보험·항공·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과 개인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나, 말레이시아에서 수취한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됨.
- 내·외국인 간에 차별은 없고,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업의 육성을 위해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도(Multimedia Super Corridor: 이하 'MSC')를, 국제적인 역외금융센터의 육성을 위해 라부안을 운영하고 있음.

1) 세율

가) 법인

- 2006년까지 28%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었으나, 매년 1%포인트씩 법인세율이 인하되어 2009년에는 25%가 될 예정

51) 별도의 주석 표기가 없는 한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와 'www.mida.gov.my'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함.

52) 공용표 외(2006) p. 29.

53) 2007년 1월 1일부터 판매세 및 서비스세 대신 상품 및 서비스세가 과세됨.

〈표 II-58〉 말레이시아의 법인소득세율

구 분	세 율
일반적인 경우	• 2007년 이전 28%, 2007년: 27%, 2008년: 26%, 2009년: 25% •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¹⁾ 이하이면 최초 과세소득 50만링깃까지 20%의 세율 적용
부동산양도소득	처분시점에 따라 5~30%의 세율 적용
기타	• 석유사업에서 얻은 소득과 석유사업에서 얻은 소득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 38%의 석유소득세 과세 • 보험업 법인이 생명보험기금에서 얻은 소득: 8% • 라부안에서 역외거래활동을 수행하는 역외기업의 감사받은 순소득: 3%의 우대세율과 연간 2만링깃의 단일세 중 선택 가능

주: 1) 말레이시아 화폐단위

나) 개인

① 일반적인 경우: 과세소득 수준에 따라 0~28%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표 II-59〉 말레이시아의 개인소득세율

(단위: MYR, %)

과세소득	~2,500	2,501~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50,000	50,001~70,000	70,001~100,000	100,001~250,000	250,000~
세율	0	1	3	7	13	19	24	27	28

② 부동산양도소득: 처분시점에 따라 0~30%의 세율이 적용됨.

나. Tax holiday

1)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

☐ 개척자 지위는 권장활동을 수행하거나 권장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주어짐.

○ 권장활동이란 제조업, 농업, 통합통업⁵⁴⁾, 호텔업, 관광업 또는 기타 산업 및 상

54) 농산물의 생산과 이러한 농산물의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말함.

업 활동을 말하는바, R&D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활동을 포함함.

- 권장활동이나 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경제적인 요구·발전에 적합한 상업적인 규모만큼 수행되고 있지 못한 활동이나 생산되고 있지 못한 제품으로 향후 긍정적인 발전전망이 있고, 이러한 활동의 수행이나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가 말레이시아에 충분하지 않고,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권장활동이나 제품은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가 결정하여 관보에 게재하며,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MIDA') 홈페이지의 'Lists of Promoted Activities & Products'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서는 MIDA에 제출하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승인을 거쳐야 함.

- MIDA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 향후 발전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표 II-60〉 말레이시아의 개척자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

항목	세금감면 혜택
기간감면	• 생산일 ¹⁾ 로부터 5~10년 동안 법정소득 ²⁾ 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소득세 면제
이월결손금 및 미공제 자본공제	•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월결손금 및 미공제 자본공제: 이월하여 동일한 권장활동이나 제품과 관련된 사후개척자 소득에서 공제 가능 ³⁾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 2-tier exemption 면세소득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뿐만 아니라 면세배당으로부터 다시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도 수령하는 주주 입장에서 세금 면제

주: 1) 생산일: 개척자 증서에 기재된 생산일

- 제조업: 생산수준이 생산능력의 30%에 도달한 날
- R&D기업: 처음으로 수입이 발생한 날
- 기타: 상업성 있는 규모만큼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한 날

2) 법정소득=총소득-수익적 지출-자본공제

3)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 이후 개척자지위가 종료되는 기업에 적용됨.

※ 기간감면

(단위: %, 年)

활동 유형	각 사업연도에 감면되는 법정소득	감면기간
일반적인 경우	70	5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 ¹⁾	100	10
권장지역 ²⁾	100	5
계약 R&D기업 ³⁾	100	5
첨단기술기업 ⁴⁾	100	5
산업연계프로그램 ⁵⁾	100	5/10

주: 1)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National and Strategic Importance)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활동이나 제품이란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이 크고, 회수기간이 길고, 기술수준이 높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활동이나 제품을 말하며, MITI가 결정한다. MSC 소재 기업은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기업으로 본다.

2) 권장지역(Promoted Area)

권장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개척자 지위, 투자소득공제, 기반시설공제, 재투자공제와 같은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장지역은 MITI가 지정하며, 현재 Sabah주와 Sarawak주, Labuan연방지역(호텔업과 관광업에 한함), 그리고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쪽 회랑지역(Kelantan주, Terengganu주, Pahang주, Johor주의 Mersing지역)이 권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권장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동일한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 R&D기업, 계약R&D기업, 사내연구기업의 정의

구분	정 의
R&D기업	말레이시아에서 관계기업 또는 다른 기업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계약R&D기업	말레이시아에서 특수관계 없는 기업 ⁵⁵⁾ 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내연구기업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목적으로 사내에서 수행하는 R&D

4) 첨단기술기업(New and Emerging Technology)

첨단기술기업은 MIDA 홈페이지의 'Lists of Promoted Activities & Products-3. High Technology Companie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MIDA의 지침에 따르면 첨단기술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내 R&D 지출액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연간 매출액의 1% 이상 돼야 함.
- 전체 종업원 중 7% 이상이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자에 해당해야 함.

5) 산업연계프로그램(Industrial Linkage Programme)

산업연계프로그램이란 내각 또는 정부기관이 주축이 되어 부품의 제조 또는 기술 R&D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다른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을 연결하는 통합프로그램을 말한다. 가격, 품질, 생산능력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급업자의 경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10년(일반적인 경우 5년) 동안 개척자지위를 부여한다.

55) 일반적으로 20% 이상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수관계 기업으로 봄.

2)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Approved Service Project)

- ☐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⁵⁶⁾를 수행하는 거주자기업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5~10년 동안 법정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며, 면세소득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 및 면세배당으로부터 다시 지급되는 배당은 수령하는 주주 입장에서 세금이 면제됨.
- ☐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며, 대규모 자본투자, 장기간의 자본회수기간, 수입대체 가능성, 수출 및 외화획득 가능성, 선진기술의 이용 및 기술이전, 고용기회 창출 및 전문적인 기술의 이용, 다른 경제부문의 효율성에 대한 기여 등과 같은 요건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가 결정됨.

※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의 기간감면

(단위: %, 年)

활동	각 사업연도에 면제되는 법정소득	감면기간
일반적인 경우	70	5
권장지역 위치	85	5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	100	10

다. 투자소득공제

1) 투자소득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① 제조업

-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개척자 지위 대신 투자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는 MIDA에 제출하며, 재무부의 승인을 거쳐야 함.

56) 항공회사·공항·항구 운영, 철도수송,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기술, 위성기반통신사업, 가스 파이프라인, 전기발전설비, 물·하수도·유독성 폐기물 설비 등

- 개척자 지위 또는 다른 종류의 투자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며, 미사용액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함.

〈표 II-61〉 말레이시아의 투자소득공제(제조업)

항목	세금감면 혜택
소득공제	• 승인일로부터 5~10년 동안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정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공제할 수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 2-tier exemption

※ 소득공제

(단위: %, 年)

활동의 유형	투자소득공제 (자본적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면되는 법정소득	감면기간
일반적인 경우	60	70	5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	100	100	5
권장지역	100	100	5
R&D기업	100	70	10
계약R&D기업	100	70	10
사내연구기업	50	70	10
첨단기술기업	60	100	5
산업연계프로그램 ¹⁾	60/100	100	5
기술·직업훈련기관 설치회사 또는 과학 분야의 사립 고등교육기관 ²⁾	100	70	10

주: 1) 산업연계프로그램

가격, 품질, 생산능력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급업자의 경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100%(일반적인 경우 6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한다.

2) 기술·직업훈련기관 설치회사 또는 과학 분야의 사립 고등교육기관

신규 기업뿐만 아니라 훈련장비의 업그레이드 또는 훈련 능력의 확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존의 기술·직업훈련기업 또는 과학 분야의 사립 고등교육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서비스업

- 승인받은 서비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는 기간감면 규정 대신 투자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nland Revenue Board: 이하 'IRB')에 제출함.

〈표 II-62〉 말레이시아의 투자소득공제(서비스업)

항목	세금감면 혜택
소득공제	5년 동안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정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공제할 수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2-tier exemption

※ 소득공제

(단위: %, 年)

활동의 유형	투자소득공제 (자본적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면되는 법정소득	감면기간
일반적인 경우	60	70	5
권장지역	80	85	5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	100	100	5

2) 재투자공제(Reinvestment Allowance)

- 거주자기업이 기존 사업의 확대, 현대화 또는 자동화, 동종 산업 내의 관련 제품으로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가 처음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15년 내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의 60%를 법정소득의 70%(또는 100%)까지 공제할 수 있음.
-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영업기간이 12개월 이상 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에 종사해야 함.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사업의 확장·현대화·자동화·동일한 산업 내의 관련 제품으로 다각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프로젝트
 - 승인받은 산업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기업이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생산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위해 수행하는 프로젝트
 - 경작 및 농장사업의 확장·현대화·다각화를 위해 수행하는 농업 프로젝트 (닭과 오리의 사육 제외)
 -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말레이시아 시민이 개방형 우리에서 농림부가 인증하는 폐쇄형 우리로의 전환을 위해 수행하는 프로젝트⁵⁷⁾
- 개척자 지위, 투자소득공제(R&D, 기술·직업훈련 제외), 산업구조조정 공제와의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며, 미사용액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함.

〈표 II-63〉 말레이시아의 재투자공제

항목	세금감면 혜택
소득공제	• 재투자가 처음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15년 내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의 60%를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정소득 일부 또는 전부에서 공제할 수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 2-tier exemption

※ 소득공제

활동의 유형	(단위: %)	
	재투자공제(자본적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되는 법정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60	70
권장지역에 위치한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60	100
규정된 생산성수준을 달성한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¹⁾	60	100

주: 1) 직전 사업연도 대비 공정효율성(Process Efficiency)⁵⁸⁾ 증가율이 IRB가 매년 발표하는 특정 제조부문의 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57) 주기마다 2만마리 이상의 구이용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또는 주기마다 5만마리 이상의 알을 낳는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58) PE(Process Efficiency)=(총생산액-자재·서비스구입액)/(총투입액-자재·서비스구입액)

3) 산업구조조정 공제(Industrial Adjustment Allowance)

- ☐ MITI와 재무부가 승인한 산업구조조정⁵⁹⁾에 참여하는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5년 동안 제조활동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의 100%까지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를 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미사용공제액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함.
- 개척자 지위를 부여받지 않은 제조업 활동이나 제품
 - 투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자본적 지출
 -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를 받은 동일한 활동이나 제품에 대해 감면기간 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

〈표 II-64〉 말레이시아의 산업구조조정 공제

항목	세금감면 혜택
소득공제	• 승인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자본적 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율은 재무부의 승인을 거쳐 MITI가 결정함.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 2-tier exemption

4) 자본공제

① 가속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 ☐ 재투자공제 기간 만료 후 발생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속자본공제가 가능함.

59) 제조업에 속하는 특정부문이 재구성이나 합병을 통해 자금자족의 기반강화,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천연자원 이용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

〈표 II-65〉 말레이시아의 가속자본공제

업 종		내 용
제조업	대상기업	재투자공제 기간 만료 후 권장제품의 제조를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
	공제율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40%의 초기공제와 매년 20%의 연간공제가 가능함(3년간 공제).
	신청서	IRB에 제출함(MIDA가 발급한 권장제품 생산증명서 첨부).
농업	대상기업	재투자공제 기간 만료 후 권장 농업활동 및 권장 식품 생산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
	공제율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20%의 초기공제와 매년 40%의 연간공제가 가능함(2년간 공제).
	신청서	IRB에 제출함(MIDA가 발급한 권장농업활동 영위증명서 또는 권장 식품 생산증명서 첨부).
환경관리	대상기업	- 폐기물이 발생하는 회사로서 현장 또는 다른 곳에 자체발생 폐기물의 보관·처리·처분시설을 설치하는 회사 - 폐기물 재활용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공제율	- 원칙: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40%의 초기공제와 매년 20%의 연간공제가 가능함(3년간 공제). - 예외: 자체 소비 에너지 절약회사의 자본적 지출→1년간 공제
	신청서	IRB에 제출함(에너지, 용수 및 통신부(Ministry of Energy, Water and Communications Malaysia)가 발급한 에너지절약용도 기계증명서 첨부).
정보통신 기술	대상기업	컴퓨터, S/W 등 정보기술관련 자산을 구입하는 회사
	공제율	-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20%의 초기공제와 매년 40%의 연간공제가 가능함(2년간 공제). - 웹사이트 개발비용: 5년간 공제

② 산업용 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 특정한 목적(제조업, 농업, 광업, 기반시설, 연구,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와 문화예술관광부에 등록된 호텔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건설·매입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의 초기공제와 연간 3%의 공제가 가능함.
- MSC 지위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Cyberjaya 내의 신축 건물은 특별히 10년에 걸쳐 공제가 가능함.

5) 기반시설 공제(Infrastructure Allowance)

- ☐ Sabah주, Sarawak주,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쪽 회랑지역에 위치한 회사로서 제조업, 농업, 호텔업, 관광업, 기타 산업·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⁶⁰⁾의 100%를 법정소득의 85%까지 공제할 수 있음.

6) 결손이전제도(Group Relief)

- ☐ 일정한 요건⁶¹⁾을 충족하면 결손기업이 가진 이월결손금의 50%(단, 승인받은 식품생산, 인공조림,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광학 및 포토닉스기업의 경우에는 100%)를 동일한 그룹 내에 속한 다른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개척자 지위, 투자소득공제, 재투자공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 투자회사를 위한 인센티브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함.

라. 특정 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 제조업

① 개척자 지위 및 투자소득공제

-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0) 교량, 부두, 항만, 도로 등 모든 영구 구조물의 재건축·연장·개량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

61)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의 보통주 납입자본금이 250만링깃을 초과할 것.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의 회계연도가 동일할 것. 그룹 내에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의 직·간접적인 지분율이 70% 이상일 것. 이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동안 계속하여 70% 이상의 주주가 동일할 것. 소유권 취득이나 외국인 소유기업 취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함.

〈표 II-66〉 말레이시아의 개척자 지위 및 투자소득공제(제조업)

구분	개척자 지위	투자소득공제
일반적인 경우	5년 동안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까지 공제 가능
첨단기술 기업 ¹⁾	5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전략적인 프로젝트	10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10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소기업 ²⁾	5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산업연계 프로그램	5년 또는 10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특수기계장비	10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10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중장비	5년 동안 재투자에서 발생한 법정소득 증가분의 70%(권장지역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까지 공제 가능
기계장비	5년 동안 재투자에서 발생한 법정소득 증가분의 70%(권장지역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까지 공제 가능
자동차 부품모듈	5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팜 오일 바이오매스	10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10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주: 1)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에 대해서는 개척자지위 부분 참조

2)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됐고, 납입자본금이 50만링깃 이하이고, 말레이시아인이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함.

② 재투자공제(Reinvestment Allowance)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기존 사업의 확대·현대화·자동화, 동종 산업 내의 관련 제품으로 다변화를 위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는 재투자가 처

음 이루어진 사업연도부터 15년간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의 60%를 법정소득의 70%까지 공제가 가능함.

- 다만, 권장지역에 위치한 회사 또는 재무부가 정한 생산수준을 초과 달성한 회사는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함.

③ 수출증가금액에 대한 세금면제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수출증가금액의 일부를 법정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공제액은 부가가치 및 수출증가금액의 크기, 신규시장 진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표 II-67〉 말레이시아의 수출증가금액에 대한 세금면제(제조업)

구 분	tax incentive
일반적인 경우	• 수출 제품이 30%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수출증가금액의 10%를 법정소득에서 공제 • 수출제품이 50%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수출증가금액의 15%를 법정소득에서 공제
말레이시아인의 지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 수출증가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회사: 수출증가금액의 30%를 법정소득에서 공제 • 신규시장 진출에 성공한 회사: 수출증가금액의 50%를 법정소득에서 공제 • 동종 업계에서 수출증가금액이 가장 큰 회사: 수출증가금액의 100%를 법정소득에서 공제

④ 가속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 재투자공제기간 15년이 경과한 후 권장제품 생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40%의 초기공제와 매년 20%의 연간공제가 가능함(즉, 3년간 공제).
- 이 외에도 사업용 건물 시스템(Industrial Building System)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형은 3년간, 전력공급 품질유지 장비는 2년간 가속자본공제가 가능함.

2) 농업

① 개척자 지위

- ☐ 5년 동안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됨.

② 투자소득공제

- ☐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까지 공제할 수 있음.

③ 식품생산(Food Production)을 위한 인센티브

- ☐ 말레이시아 이슬람교 개발청(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이 발급하는 할랄⁶²⁾ 인증 및 기타 품질 인증을 받고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10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음.
- ☐ 말레이시아인이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소유 제조 기업이 권장 식품 가공활동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식품생산에 종사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2가지 incentive package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62)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잡은 동물의 고기

〈표 II-68〉 말레이시아의 식품생산기업 투자를 위한 tax incentive package

package	대상기업	tax incentive
A	투자회사	자회사 지분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자회사	- 이익발생일로부터 10년(기존기업의 재투자: 5년) 동안 법정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면세소득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 수령하는 주주 입장에서 세금 면제
B	투자회사	자회사 지분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자신의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결손이전제도)
	자회사	- 이익발생일로부터 10년(기존기업의 재투자: 5년) 동안 법정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면세소득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 수령하는 주주 입장에서 세금 면제

④ 자원기반산업(Resource-Based Industries)을 위한 인센티브

- 말레이시아인이 51%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고무, 기름야자나무, 기타 수출 가능성이 있는 목재 기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⑤ 재투자공제(Reinvestment Allowance)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사업연도로부터 15년간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의 60%를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까지 공제가 가능함.
- 12개월 이상 쌀, 옥수수, 채소,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등의 필수 식품 생산과 기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활동에 종사한 개인이나 기업
 -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말레이시아 시민이 개방형 우리에서 농림부가 인증하는 폐쇄형 우리로의 전환을 위해 수행하는 프로젝트⁶³⁾

63) 주기마다 2만마리 이상의 구이용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또는 주기마다 5만마리 이상의 알

⑥ 가속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 재투자공제기간 15년이 경과한 후 권장 농업활동과 권장 식품생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20%의 초기공제와 매년 40%의 연간공제가 가능함(즉, 2년간 공제).
- 고무나무를 재배하지 않던 농원이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에 고무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1년간 가속자본공제가 가능함.

⑦ 농업공제(Agricultural Allowance)

-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⁶⁴⁾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자본공제 또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미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농업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⑧ 승인받은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100% 공제

- 소득세법 1967 Schedule 4A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농업프로젝트⁶⁵⁾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100% 공제가 가능함.
- 이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자본공제 또는 농업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공제대상비용의 범위는 농업공제와 동일함.

⑨ 수출증가금액에 대한 세금면제

- 신선과일, 건조과일, 생화, 말린 꽃, 관상식물, 관상어를 수출하는 회사는 수출증가금액의 10%를 법정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을 낳는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64) 토지 개간·정지비용, 농작물 식재비용,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공장 및 기계장치,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리후생이나 주거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포함) 및 건축물의 건설·매입 비용

65) 채소, 과일(파파야, 바나나, 패션프루트, 스타프루트, 구아바, 망고스틴), 괴경류, 근채류, 허브, 향신용 작물, 사료용 작물, 수경재배작물, 관상어 양식, 어류와 참새우 양식, 새조개류, 굴, 홍합과 해조류 양식, 새우, 참새우, 어류의 부화, 특정 종의 인공조립 프로젝트

⑩ 식품 냉장 유통시설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 냉장실, 냉장 냉동 트럭 시설을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 식료품의 수집·처리와 같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인 소유회사가 농산물을 위한 냉장 시설 또는 서비스에 재투자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69〉 말레이시아의 식품 냉장 유통시설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구분	tax incentive
개척자 지위	5년 동안 재투자에서 발생한 법정소득 증가분의 70%(권장지역: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투자소득공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까지 공제 가능

3) 생명공학산업(Biotechnology Industry)

- BioNexus 지위 기업⁶⁶⁾ 및 당해 기업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6) BioNexus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바이오기술공사(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의 승인을 거쳐야 함.

〈표 II-70〉 말레이시아의 생명공학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

구분	조세지원 내용
BioNexus 지위 기업	• 이익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 소득세 면제 • 5년 동안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적 지출의 10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 BioNexus 지위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 수령하는 주주 입장에서 세금 면제 • 원재료 · 부품 · 기계장치: 관세 및 판매세 면제 • R&D 비용과 수출촉진비용: 이중의 소득공제 가능 • 바이오기술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 10년 동안 산업용 건물 공제 가능 • BioNexus 지위기업이 바이오기술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5년 내에 발생한 인지세 및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면제
BioNexus 지위 기업의 투자자	다음과 같은 금액을 투자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 • BioNexus 지위 기업의 지분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가 BioNexus 지위 기업에 투자한 금액 • 기업 또는 개인이 BioNexus 지위 기업에 투자한 금액

4) 관광산업

- 관광산업에는 호텔사업과 행락지 건설, 하계휴양 캠프를 포함한 오락사업, 3,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건설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71〉 말레이시아의 관광산업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

구분	tax incentive
개척자 지위	5년 동안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투자소득공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까지 공제 가능
2차 인센티브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의 확장 · 현대화 · 개조 · 보수를 위해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호화유람선 산업을 위한 인센티브	• 호화유람선 제작회사: 개척자 지위 부여 • 랑카위 섬에서 수리 · 유지보수 업무 수행, 말레이시아에서 호화유람선 용선사업: 5년 동안 소득세 전액 면제
이중의 소득공제	• 등록된 호텔 또는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말레이시아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지출한 일정한 비용 •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승인받은 국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패키지투어 전문 여행업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패키지 투어 전문 여행업자가 5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 연간 1,200명 이상의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패키지 투어를 기획하는 경우
국제회의 및 무역 전시회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 국내기업이 연간 외국인 참석자가 500명 이상 되는 국제회의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고 얻은 법정소득: 소득세 면제 및 배당소득에 대한 2-tier exemption • 국내기업이 연간 외국인 참석자가 500명 이상 되고, 말레이시아 대외무역진흥공사의 승인을 얻은 국제적인 무역전시회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고 얻은 법정소득: 소득세 면제 및 배당소득에 대한 2-tier exemption
문화공연을 위한 인센티브	음악단체 또는 문화단체를 설립 · 운영하는 기업, 관광부가 승인한 국내외 문화공연을 후원하는 기업: 국내공연은 50만링깃까지, 해외공연은 200만링깃까지 단일의 소득공제 가능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	관광객을 위해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자: 국산차 구입에 대해 소비세 전액 면제

5) 환경관리(Environmental Management)

① 개척자 지위 및 투자소득공제

□ 환경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 사업 내용에 따라 공제기간, 공제금액, 공제한도가 달라짐.

〈표 II-72〉 말레이시아의 개척자 지위 및 투자소득공제(환경관리사업)

구분	개척자 지위	투자소득공제
인공조림 프로젝트	10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10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독성 유해 폐기물의 보관·처리·폐기	5년 동안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까지 공제 가능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5년 동안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까지 공제 가능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5년 동안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까지 공제 가능
재생 가능한 에너지자원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	10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10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② 가속자본공제

□ 폐기물이 발생하는 회사로서 현장 또는 다른 곳에 자체발생 폐기물의 보관·처리·처분시설을 설치하는 회사 또는 폐기물 재활용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40%의 초기공제와 매년 20%의 연간공제가 가능함(즉, 3년간 공제).

○ 자체 소비 에너지 절약회사의 자본적 지출은 1년간 가속자본공제가 가능함.

6) R&D⁶⁷⁾

□ R&D 활동을 영위하면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 R&D 비용에 대한 이중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 차례 더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 외에도 공공부문 R&D의 상업화, 연구자의 연구결과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표 II-73〉 말레이시아의 R&D 활동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구분	조세지원 내용
개척자 지위	계약R&D기업: 5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투자소득공제	• 계약R&D기업 및 R&D기업¹⁾: 10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100%를 법정소득의 70%까지 공제 가능 • 사내연구기업: 10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50%를 법정소득의 70%까지 공제 가능
2차 인센티브	R&D기업, 계약R&D기업, 사내연구기업은 한 차례 더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R&D비용에 대한 이중의 소득공제	• 소득세법 34A에 따른 이중의 소득공제: 승인일로부터 10년 내에 지출한 일정한 연구비용에 대해 이중의 소득공제 가능 • 소득세법 34B에 따른 이중의 소득공제: 승인받은 연구기관에 현금으로 지급한 기여금(자본자산 구입용도 제외) 또는 승인받은 연구기관·기업, R&D기업, 계약R&D기업에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이중의 소득공제 가능
공공부문 R&D의 상업화 ²⁾	• 투자회사: 상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회사 투자금액을 자신의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 • 자회사: 10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연구자의 연구결과 상업화	개인이 해당 장관의 승인을 얻은 과학적인 연구결과의 상업화에 성공한 경우에는 당해 연구에서 처음으로 수입을 얻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법정소득의 50%에 대해 소득세 면제

주: 1) 계약R&D기업 및 R&D기업의 요건

- 당해 기업의 소득 중 70% 이상이 R&D 활동에서 발생해야 함.
- 제조업 관련 R&D의 경우, 전체 인력 중 50% 이상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R&D 기능을 수행하는 자여야 함.
- 외국인 연구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연구자를 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2)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인이 투자회사 및 상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해야 하며, 투자회사가 연구결과를 상업화하는 회사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해야 함. 또한 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연구결과가 상업화돼야 함.

67) R&D기업, 계약R&D기업, 사내연구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나. 1) 개척자 지위” 부분 참조

7) 교육훈련

- ☐ 교육훈련 활동을 영위하면 투자소득공제, 산업용 건물 공제, 교육기자재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표 II-74〉 말레이시아의 교육훈련 활동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구분	조세지원 내용
투자소득공제	기술 또는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는 기관, 과학 분야의 사립 고등교육기관: 10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100%를 법정소득의 70%까지 공제 가능
산업용 건물 공제	승인받은 산업, 기술 또는 직업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 10년 동안 10%의 산업용 건물 공제 가능
교육기자재의 세금면제	승인된 훈련기관과 사내훈련 프로젝트 외에 모든 사립고등교육기관: 실험실습실 기자재, 작업실, 방송실, 어학실습실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교육용 기자재에 대해 수입관세, 판매세, 소비세 면제
사용료에 대한 세금면제	교육기관이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8) 정보통신기술

- ☐ 원본 S/W를 개발하거나 기본 S/W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개척자 지위, 가속자본공제, 수출증가금액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⁶⁸⁾.

68)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S/W가 범용 S/W여야 하며, 기존 S/W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패키지의 취득원가가 변경비용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표 II-75〉 말레이시아의 정보통신기술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구분	tax incentive
개척자 지위	5년 동안 법정소득의 70%에 대해 소득세 면제
가속자본공제	- 컴퓨터, S/W 등 정보기술관련 자산을 구입하는 회사: 20%의 초기공제와 매년 40%의 연간공제(2년간 공제) - 웹사이트 개발비용: 5년간 공제
수출증가금액에 대한 세금면제	수출증가금액의 50%를 법정소득에서 공제 가능

9)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⁶⁹⁾

-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기업은 소득세 면제, 투자소득공제, 수입관세 · 판매세 · 소비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76〉 말레이시아의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구분	조세지원 내용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법정소득의 70%에 대해 소득세 면제 - 권장지역 위치: 5년, 법정소득의 85% -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경우: 10년, 법정소득의 100%
소득세법 Schedule 7B에 따른 투자소득 공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를 법정소득의 70%까지 공제 가능 - 권장지역 위치: 5년, 자본적 지출의 80%, 법정소득의 85% -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자본적 지출의 100%, 법정소득의 100%
수입관세 · 판매세 · 소비세 면제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 · 부품의 수입: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판매세와 소비세 면제

69)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의 정의에 대해서는 “나. 2)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 부분 참조

10)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지식기반기업은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에 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지식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해야 함.
- 다수의 지식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사적인 지식기반 마스터플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표 II-77〉 말레이시아의 지식기반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구분	tax incentive
개척자 지위	5년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투자소득공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마스터플랜 수립비용 공제	전사적인 지식기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11) 제조관련 서비스

- 다음과 같은 제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통합물류서비스: S/W 및 H/W의 구입, 보관 · 운송 · 포장 활동과 관세정산을 포함한 공급 사슬 관리
- 통합시장지원서비스: 브랜드 개발, 고객 개발, 포장 디자인, 광고 및 촉진활동
- 통합중앙공익설비: 증기, 광물질을 제거한 용수, 산업용 가스 제공
- 냉장유통설비: 냉장창고, 냉동 트럭, 기타 부패되기 쉬운 국내 생산 식품의 수집 · 저장 · 유통 관련 서비스의 제공

〈표 II-78〉 말레이시아의 제조관련 서비스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구분	tax incentive
개척자 지위	5년 동안 법정소득의 70%(권장지역: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투자소득공제	5년 동안 자본적 지출의 60%(권장지역: 100%)를 법정소득의 70%까지 공제 가능

12) 벤처캐피털

- ☐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인센티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10년 동안 소득세 면제: 창업자본금 또는 창업·초기 단계의 자금융자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의 50%(2007년 이전에는 7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3) 투자지주회사(Investment Holding Company)

- ☐ 일반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비용 항목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함.
- 이사의 수수료, 급여 및 부가급여, 경영수수료, 비서·감사·회계수수료, 전화 비용, 인쇄비, 사무용품비용, 우편비용, 임차료를 비롯한 사무소 유지비용

14) 해외투자(Overseas Investment)

- ☐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개시 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말레이시아에 송금된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외국인소유기업 취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

〈표 II-79〉 말레이시아의 해외투자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구분	조세지원 내용
사업개시 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¹⁾	거주자기업이 말레이시아 국외의 승인받은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사업개시 전에 지출한 비용 ²⁾ 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
말레이시아에 송금된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³⁾	승인받은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에 송금된 금액: 소득세의 70% 감면
외국인소유기업 취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말레이시아 국외의 외국인소유기업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비용을 5년에 걸쳐 상각 가능 • 소득공제요건 - 매수회사: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인이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제조·무역·마케팅 사업에 종사해야 함. - 피매수회사: 첨단기술 획득 또는 국내 제품의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 취득하는 것이어야 하며, MIDA의 승인을 얻어야 함.

주: 1)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회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지분의 70% 이상을 말레이시아인이 소유해야 함.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30% 이상 돼야 하고, 해외사업을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하며, 말레이시아의 원재료와 부품을 이용해야 함.

2) 사업타당성 또는 시장조사를 위한 기업 대표자의 외국 여행경비 및 숙식비용

3) 사업개시 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15) 운영총괄본부(Operational Headquarter)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총괄본부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종업원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납입자본금이 5만링깃 이상 돼야 함.

○ 매년 사업비 지출액이 150만링깃 이상 돼야 하며, 3명 이상의 고급 전문·관리 인력을 고용해야 함.

○ 외국에 있는 3개 이상의 관계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⁷⁰⁾를 제공해야 함.

70) 일반 경영관리, 사업계획·조정, 정보관리·가공, 원재료, 부품, 완성품의 구매, 기술적인 지원과 유지업무, 마케팅 관리 및 판매촉진계획, 국내외 사무소 또는 관계회사를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되는 R&D, 국내외 사무소 또는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교육훈련, 인사관리, 재정·자금

- 외국에 상당한 규모의 기업 네트워크(모회사·대표사무소·관계회사 포함)를 형성해야 하며, 전문직·기술·지원인력을 상당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

〈표 II-80〉 말레이시아의 운영총괄본부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구분	tax incentive
운영총괄본부의 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10년 동안 소득세 면제 - 국외의 사무소 또는 관계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 - 국내 관계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의 20%) - 국외사무소 또는 관계회사에 외화대출금을 제공하고 얻은 이자소득 - 국외사무소 또는 관계회사를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R&D 활동을 수행하고 얻은 사용료소득
운영총괄본부의 종업원에 대한 세금면제	시민이 아닌 운영총괄본부의 종업원이 국외고용기간에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16) 국제적인 조달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re)⁷¹⁾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조달센터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관세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원재료·부품·완성품을 국내외 관계기업과 비(非)관계기업에 판매·구입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납입자본금이 5만링깃 이상 돼야 함.
 - 매년 사업비 지출액이 150만링깃 이상 돼야 하며, 말레이시아 항구 및 여객선의 이용이 증가해야 함.
 - 세 번째 영업연도까지 연간 매출액이 5천만링깃 이상 돼야 하며, 자유지역(자유산업지역 또는 자유상업지역), 허가받은 창고, 허가받은 제조 창고에 위치

관리서비스, 기업금융자문

71)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

해야 함.

- 국내시장 매출액(자무지역, 허가받은 제조 창고에 대한 매출 포함)이 연간 매출액의 20% 이하여야 하며, 말레이시아 국내외의 완성품 · 부품 · 예비부품을 말레이시아 국내외의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딜러, 수입업자에게 배송하기 위해 수입하고 통합하는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표 II-81〉 말레이시아의 국제적인 조달센터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항목	주요 내용
기간감면	10년 동안 법정소득에 대해 세금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2-tier exemption
관세면제	자유지역, 허가받은 제조 창고,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에 재포장 · 화물 통합을 위해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원재료 · 부품 · 완성품

17) 지역물류센터(Regional Distribution Centre)

□ 지역물류센터의 요건

- 자신의 브랜드를 위해 집단 내의 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을 국내외 딜러, 수입업자, 자회사 또는 기타 비(非)관계회사에 배송하기 위해 제품 등을 수집 · 통합하는 센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
 -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납입자본금이 5만링깃 이상 돼야 함.
 - 매년 사업비 지출액이 150만링깃 이상 돼야 하며, 말레이시아 항구 및 여객선의 이용이 증가해야 함.
 - 세 번째 영업연도까지 연간 매출액이 1억링깃 이상 돼야 하며, 자유지역(자유산업지역 또는 자유상업지역), 허가받은 창고, 허가받은 제조 창고에 위치해야 함.
 - 국내시장 매출액(자무지역, 허가받은 제조 창고에 대한 매출 포함)이 연간 매출액의 20% 이하여야 함.

□ 세금감면 혜택: 국제적인 조달센터와 동일

마.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1)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도(Multimedia Super Corridor: 이하 'MSC')

① 개요

□ 쿠알라룸푸르 남쪽에 위치한 동서 15km 남북 50km의 지역으로 멀티미디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분배·사용하는 기업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996년 8월 1일 생겨났음.

□ MSC에서 정보통신기술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MSC 지위를 부여받아 정부가 보증하는 10가지 혜택⁷²⁾을 누릴 수 있음⁷³⁾.

② MSC 지위기업의 요건

□ MSC 지위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향상,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멀티미디어 기술을 개발·사용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며, MSC 지위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요건과 승인 후 충족해야 하는 사후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72) 개척자 지위 또는 투자소득공제, R&D 보조금, 종합적인 사이버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無검열, 국제적인 수준의 물리적인 기반시설과 IT기반시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통신료율과 서비스, 강력한 권한을 갖춘 멀티미디어개발공사(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이하 'MDC')의 자문과 서비스 제공, 양질의 계획도시 개발, 우수한 R&D시설, 환경 친화적인 환경

73) 창업지원회사(Incubators)와 고등교육기관(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이하 'IHL') 역시 MSC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음.

〈표 II-82〉 MSC 지위기업이 되기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사전요건	사후요건
• 멀티미디어 제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자 또는 공급자여야 함. • 상당수의 지식근로자¹⁾를 고용해야 함. • 기술이전, MSC의 개발, 말레이시아 지식 경제에 공헌해야 함. • 멀티미디어 사업·활동을 위해 별도의 법률실체를 설립해야 함. • 지정된 사이버도시 내에 위치해야 함. • 환경지침을 준수해야 함.	• 승인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등록을 마쳐야 함. • 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정된 사이버도시 내에 총괄본부를 설립하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지식근로자가 전체 인원(지원인원 제외)의 15% 이상 돼야 함. • MSC의 환경지침, 기타 관련 규정, 라이선싱 요건을 준수해야 함.

주: 1)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s)란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자

-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산업 또는 멀티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자
- 학사학위(전공 무관) 또는 기술대학의 졸업증(멀티미디어 또는 정보통신산업 전공)을 갖고 있는 자로서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산업 또는 멀티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자
- 석사 이상(전공 무관)의 학위를 갖고 있는 자

□ MSC 지위 기업은 개척자 지위, 투자소득공제, 관세 면제, 원천징수세 면제 등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표 II-83〉 MSC 지위 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

구분	tax incentive
개척자 지위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아 5년(5년의 추가적인 기간연장 가능) 동안 법정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투자소득공제	국가적이며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의 100%를 법정소득의 100%까지 5년 동안 소득공제
관세 면제	정보통신기술 또는 멀티미디어 장비(승인받은 MSC 활동에 사용되고,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것)의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원천징수세 면제	• 지역적인 IT 솔루션 허브, 인터넷망 연동, 데이터센터, 인터넷 데이터센터, 콜센터 사업에 종사하고 Menara Kuala Lumpur 이외의 사이버도시에 소재하는 MSC 지위 기업이 비거주자기업에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세 면제 - 기술적인 조언 및 기술서비스에 대한 지급액 - 기술개발과 관련된 라이선싱 수수료 - 기술개발을 위한 대출금 이자

2) 라부안 국제 역외금융센터(Labuan International Offshore Financial Centre)

① 개요

- 말레이시아 동쪽의 Sabah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관세 면제 항구로서 다양한 세금 면제 혜택과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1990년 10월 1일부터 별도의 사법체계가 적용되고 있고, 법률에 의해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됨.
- 국제적인 역외금융센터 개발을 위해 1996년 2월 15일 라부안역외금융서비스청 (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이하 'LOFSA')이 설립됨.
- 일반적으로 역외기업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레이시아 통화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말레이시아 거주자 또는 국내기업과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금지됨.

② 조세체계

- 역외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역외기업은 라부안역외사업활동세법 1990(Labuan Offshore Business Activity Tax Act 1990)에 따라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84〉 라부안의 조세체계

구분	내 용
납세자	• 역외사업활동 ¹⁾ 을 영위하는 역외기업
과세방법	• 역외거래활동 ²⁾ 에서 발생한 이익: 「라부안역외사업활동세법 1990」에 따라 과세 ³⁾ • 역외비거래활동 ⁴⁾ 에서 발생한 이익: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1967」에 따라 과세
세율	역외거래활동을 수행하는 역외기업의 감사받은 순소득에 대해 3%의 우대세율 적용 또는 2만링깃의 단일세 납부 중 선택 가능
이중과세 회피	조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면 라부안 역외기업 역시 조세조약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⁵⁾ .

주: 1) 역외사업활동이란 역외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기업과 외국 통화를 이용하여 라부안에서 수행하는 무역·비무역활동을 말함. 그러나 관리·법정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국내기업 투자,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역외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예를 들면 거주자가 역외기업의 주식을 청약하는 것), 역외은행의 말레이시아 통화 또는 스와프거래 매입·매도, 리스, 뮤추얼 펀드를 통한 말레이시아 투자, 승인받은 딜러와의 자금중개, 국내보험의 재보험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말레이시아 통화를 이용하여 수행하더라도 역외사업활동의 범위에 포함함.

2) 은행, 보험, 무역, 경영, 라이선싱, 역외비거래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활동 포함, 제조업 제외

3) 2008년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역외거래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1967』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짐.

4) 역외기업이 자신을 위해 증권, 주식, 대여금, 예금, 부동산 등을 투자·소유하는 활동

5) 그러나 라부안을 조세조약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는 국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바, 2005년 10월 현재 호주, 칠레,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세이셸이 라부안을 조세조약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음.

③ 세금감면 혜택

□ 라부안에서 역외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역외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85〉 라부안에서 역외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역외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항목	tax incentive
배당소득	• 역외기업이 받은 배당에 대해 소득세 면제 • 역외기업이 역외사업활동이나 면세소득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 역외기업이 국내기업에 지급하는 배당 및 이러한 배당을 재원으로 국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수령하는 주주 입장에서 소득세 면제
이자소득	• 역외기업이 거주자, 비거주자, 다른 역외기업에 지급하는 이자(은행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제외)에 대해 소득세 및 원천징수세 면제
사용료	• 역외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기업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 소득세 및 원천징수세 면제
기술지원·서비스수수료	• 역외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기업에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기술·경영수수료에 대해 소득세 및 원천징수세 면제 – 비거주자에게 구입한 공장 및 기계장치에 귀속되는 재산상의 권리의 이용·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비거주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 과학적·상업적인 사업, 벤처, 계획의 기술지원·관리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문·지원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 동산의 임대료, 기타 지급액
임대소득	• 비거주자가 라부안의 역외은행이나 리스회사에 동산을 이용하게 하고 얻은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원천징수세 면제
근로소득	• 다음과 같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시민이 아닌 자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라부안 소재 신탁회사의 관리부문에 고용되어 얻은 근로소득의 50% – 시민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라부안에 있는 중앙·주정부, 법정단체 또는 역외기업에 고용되어 얻은 주택·라부안 지역 보조금의 50% – 시민이 아닌 자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라부안 소재 역외기업의 관리부문에 고용되어 얻은 근로소득

〈표 II-85〉의 계속

항목	tax incentive
전문직서비스소득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라부안에서 역외기업에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직 서비스¹⁾를 제공한 자가 얻은 법정소득의 65%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면세소득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 2-tier exemption
기반시설사업소득	• 라부안에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²⁾ 또는 이러한 자산의 임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얻은 조정후소득의 50%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동안 소득세 면제 • 면세소득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 2-tier exemption
기타소득	•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역외신탁의 수익자가 얻은 배당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역외기업의 이사(시민이 아닌 개인)가 그의 능력에 따라 얻은 수수료
인지세 및 기타 간접세	• 역외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역외기업이 작성하는 문서, 역외기업의 제휴계약, 역외기업 주식의 양도 문서에 대해 인지세 면제 • 라부안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판매세 면제 • 소비세 및 관세 면제(석유 및 석유제품 제외)
권장지역에 대한 세금감면	• 라부안에서 관광·호텔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권장지역 소재기업과 동일한 세금감면혜택(개척자지위, 투자소득공제 등) 향유

주: 1) 법률, 회계, 세무, 재무, 비서업무(라부안의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포함)

2)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이란 도로, 하수도, 통신시설, 학교, 병원, 사무소, 항구, 항공시설, 호텔, 공공시설, 오락시설 등을 말하며, 자가건설 또는 건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로서 1990년 10월 1일부터 6년 내에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돼야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3) 자유지역(Free Zones)

□ 자유지역에 위치하면 통관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제조공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부품·기계장치의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완제품·반제품의 수출에 대해 수출관세가 면제되고, 산업토지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장을 이용할 수 있음.

○ 2005년 현재 13개의 자유무역지역과 15개의 자유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4) 허가받은 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 ☐ 자유지역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되며, 주로 수출제품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자유지역과 유사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바. 관세 · 판매세 · 국내소비세 면제⁷⁴⁾

- ☐ 관세 · 판매세 · 국내소비세와 관련된 조세감면 혜택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II-86〉 말레이시아의 관 · 판매세 · 국내소비세 면제 혜택

구분	조세지원 내용
원자재 · 부품	- 수출용 제품: 당해 원자재 ·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나 품질과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수입관세 전액 면제 - 내수용 제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 부품이면 수입관세 전액 면제 - 과세대상 원자재 · 부품으로 만들어질 완제품이 수입관세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수입관세 전액 면제 - 호텔 및 관광 프로젝트: 수입이 확인된 자재 ·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및 판매세가 면제되며, 국내 매입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판매세 면제
제조활동의 아웃소싱	- 말레이시아인이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상표 소유권자가 제조활동을 하청주는 경우 - 국내외 하청 제조업체가 완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원자재와 부품: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 국내 하청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완제품에 사용될 해외 하청 제조업체의 반제품: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기계장비	-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수입기계장비: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비: 판매세 면제

74) 공용표 외(2006) p. 93~96.

〈표 II-86〉의 계속

구분	조세지원 내용
예비부품 및 소모품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예비부품 및 소모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 생산물량의 80% 이상이 수출되는 경우 또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당해 품목의 수입관세가 5%를 넘는 경우
수입관세 및 판매세 환급	제조업체가 부품·원자재·포장재를 1년 내에 수출용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 환급
판매세 면제	• 1972년 판매세법에 따라 승인받은 제조업체가 제조에 사용한 물품에 대해 판매세 면제 • 특정 범주의 상품¹⁾에 대해 투입단계와 생산단계에서 판매세 면제
수입 의료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국내 의료장비 제조업체가 의료장비시스템 일체를 공급·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의료장비(국내에서 제작되지 않는 것에 한함)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주: 1) 규제물품, 의약품, 유제품, 납결 염색을 한 직물, 화장품, 사진용 카메라, 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기계류와 수출용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물품 등 포함

사.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 ☐ 개척자기업 등이 면세소득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과 면세배당으로부터 다시 지급되는 배당금은 수령하는 주주 입장에서 세금이 면제됨.
- ☐ 2008년 예산안에 따르면 Single-Tier 시스템의 도입으로 거주자기업이 세후소득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은 모든 수준의 주주 입장에서 세금이 면제됨.
 - 법인 단계에서 한 번만 과세가 이뤄지며,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기업이 Single-Tier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함.

4.2.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⁷⁵⁾

- 말레이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04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약간 감소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술집약산업 및 R&D · 디자인 개발 · 유통 · 마케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내 · 외국인 구분 없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투자인센티브: 산업촉진법 1986(Promotion of Investments Act of 1986: 이하 ‘PIA’)과 산업협력법 1975(Industrial Coordination Act of 1975)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업 투자와 관련된 세금감면 혜택은 PIA에서, 서비스업 투자와 관련된 세금감면 혜택은 소득세법에서 다루고 있음.
 - 말레이계의 경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지분소유와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100% 외국인 지분 소유가 허용됨.

〈표 II-87〉 말레이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만달러)

국가/지역	1990~2000 연평균	2002	2003	2004	2005
말레이시아	4,722	3,203	2,473	4,624	3,967
중국	30,104	52,743	53,505	60,630	72,406
인도네시아	1,547	145	-597	1,896	5,260
동남아시아	22,161	15,774	19,920	25,666	37,136
아시아 · 오세아니아	76,616	96,244	110,489	157,328	199,951
개발도상국	134,670	163,583	175,138	275,032	334,285
전 세계	495,391	617,732	557,869	710,755	916,277

자료: UNCTAD(2007)

75) www.mida.gov.my

□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 중 제조업과 관련된 업무는 MIDA에서, MSC 지위기업과 관련된 업무는 MDC에서 수행하고 있음.

- 그 이외 분야의 투자신청서는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며, 다단계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음.
- MIDA는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MIDA는 투자액의 규모, 수출액, 자금조달 유형(국내 또는 역외), 자본집약·노동집약비율, 국내 경제로의 기술파급 가능성, 사업기반시설의 능력, 생산품을 위한 국·내외시장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투자승인은 case-by-case 기준으로 처리되며, 정부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음⁷⁶⁾.

□ 주요 투자국가 및 주요 투자업종

- 2006년 제조업 분야에서 주요 투자 국가는 일본(44억링깃), 네덜란드(33억링깃), 호주(26억링깃), 미국(25억링깃) 등과 같은 선진국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전자(86억링깃), 화학·화학제품(30억링깃), 기초금속제품(23억링깃), 비금속 광물제품(9.62억링깃), 식품생산(8.95억링깃) 등임.
- MIDA는 2006년 중에 184개 지역 사업장(regional establishment)의 설립을 승인하였는데, 이러한 지역 사업장의 설립으로 연간 9억 5020만링깃에 달하는 사업비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 말레이시아 정부는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도에서 정보통신기술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MSC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바, 2006년에 MSC 지위를 부여받은 기업의 수는 307개이고, 총투자액은 2.9조링깃이며, 이 중 해외투자(0.9조링깃)는 전체 투자의 31%를 차지함.
- 서비스업 분야의 정보 수집은 2006년 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간 동안 서비스업 분야에서 1,385건(RM 33.1조)의 투자가 승인됐고,

76) PRS Group(2007)

이 중 해외투자는 9.7%(RM 3.2조)를 차지함.

5. 대 만

5.1. 조세지원제도⁷⁷⁾

가. 개요

- 법인세율은 25%이나,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이하 ‘MOF’)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유효세율은 약 16%이며, 특히 첨단기술기업의 유효세율은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으로 인해 16%보다 훨씬 낮음.
- 법인세 외에 기업에 적용되는 기타 주요 세금에는 영업세(business tax), 관세(customs duty), 물품세(commodity tax) 등이 있음.
- 투자인센티브는 산업고도화촉진조례(Statute for Industrial Upgrading: 이하 ‘SIU’)에서 규정하고 있음⁷⁸⁾.
 - SIU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조세혜택과 비(非)조세혜택을 모두 다루고 있음.
 - SIU의 적용대상은 대만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만에 설립한 자회사 역시 대만의 국내기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내외국인 간에 차별이 없음.
- MOF는 2007년 3월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⁷⁹⁾, 정치적인 내분과 국민적인 합의 부족으로

77) 별도의 주석표기가 없는 한 ‘<http://investintaiwan.nat.gov.tw/en/>’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78)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http://www.ibfd.org/Asia-Pacific/Taxation%20&%20Investment%20Database)

SIU가 만료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논의가 잠정 보류됐음.

- MOF는 2007년 3월 21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세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부 재정위원회에 제출했음.
 - 개인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5%포인트 인하(40%→35%)
 - 법인소득세 세율 10%포인트 인하(25%→15%)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한계세율 25%포인트 인하(50%→25%)
 - 기업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10% 법인세 폐지
-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면 500만대만달러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바, 세법 개정안 제출 당시 何志欽 MOF 장관은 SIU의 폐지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시스템을 단순화함으로써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자 何志欽 MOF 장관은 2007년 9월 법인세율을 상당히 낮출 계획이란 것은 확실하나, SIU가 만료되기 전에는 세율 인하에 관한 법률 제정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1) 세율⁸⁰⁾

가) 법인

□ 과세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25%의 세율이 적용됨.

〈표 II-88〉 대만의 법인소득세율

(단위: 대만달러, %)

과세소득	세율	비 고
~50,000	0	0
50,000~100,000	15	둘 중 작은 금액 ① 전체 과세소득 × 15% ② (전체 과세소득 - 5만대만달러) × 50%
100,000~	25	전체 과세소득 × 25% - 1만대만달러

79) TNS online(2007. 3. 26.), Taipei Times(2007. 3. 22.)

80) www.ibfd.org/Asia-Pacific Taxation & Investment Database

나) 개인

□ 기혼자의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며, 6~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표 II-89〉 대만의 개인소득세율

(단위: 대만달러, %)

과세소득	~370,000	370,001 ~990,000	990,001 ~1,980,000	1,980,001 ~3,720,000	3,720,001~
세율	6	13	21	30	40

나. Tax holiday

1) 신흥·주요·전략산업(Emerging, Important and Strategic Industries)

□ 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경쟁우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흥·주요·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투자자에게 5년간 소득세 면제 또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기업의 소득세 면제 규정과 투자자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세액공제를 받기로 선택하면 기업은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청약일로부터 2년 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투자세액공제와 소득세 면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신흥·주요·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경제부 산하 산업개발국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이하 ‘MOEAIDB’)의 승인을 거쳐야 함⁸¹⁾.

– MOEAIDB의 승인 후 3년 내에 계획했던 모든 투자가 완료되어야 하나, 전체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이 가능함.

81) 설립 또는 증자에 관한 경제부의 승인서한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함.

〈표 II-90〉 대만의 신흥·주요·전략산업을 위한 tax holiday 혜택

구분	내 용
대상기업	신흥·주요·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청약일로부터 2년 내에 주주의 승인을 얻어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이하 ‘MOEA’)에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기업
조세혜택	① 신규설립: 5년 동안 소득세 면제 ② 증자에 의한 사업 확장 ¹⁾ : 사업 확장에서 얻은 소득 증가분에 대해 5년 동안 소득세 면제
감면기간의 개시일	① 원칙 • 신규설립: 제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시작된 날 • 증자에 의한 사업 확장: 확장 결과 새로 추가한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② 연기: 원칙적인 개시일로부터 4년까지 연기가 가능함 ²⁾ .
조세혜택의 이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독립적인 생산·서비스 단위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양도하면 양수자가 계속하여 기간 감면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
중복적용 배제	신흥·주요·전략기업이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면 해당 기업의 주주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능함).
공제액 계산	①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회계장부를 이용하여 직접 공제액을 계산함. ②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장비 취득가액 또는 매출액 증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계산함.

주: 1) 증자를 통해 독립적인 생산·서비스 단위를 구축하거나 주요한 생산·서비스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 한하며, 미처분잉여금을 이용하여 증자하는 경우를 포함함.
2) 감면기간의 개시일이 연기되었다면 연기된 회계연도의 첫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간주함.

2) 기반시설사업(Infrastructure Projects)

□ 대만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기반시설사업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투자자에게 5년간 소득세 면제 또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해당 사업 개시 후 과세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되며, 감면기간의 개시일은 원칙적인 개시일로부터 4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나, 3년 이상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 투자소득공제

□ 투자소득공제로는 가속상각제도가 유일함.

- 기업이 R&D · 실험 · 품질관리를 위해 구입한 장비와 에너지 절약 · 신규 청정에너지 도입을 위해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2년간 가속상각이 가능함.
- 승인청, 신청기한, 신청절차, 기타 관련 사항은 행정원(行政院)이 정함.

라. 투자세액공제

1) 신규 장비 · 기술 투자

□ 신규 장비 ·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5~20%에 상당하는 금액을 5년 동안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표 II-91〉 신규 장비 · 기술 투자에 대한 대만의 투자세액공제제도

구분	내 용
감면대상	• 자동화 장비 · 기술 투자 • 재활용, 오염방지 장비 · 기술 투자 • 신규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 산업용 용수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 기술 투자 •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성 증가를 위한 장비 · 기술 투자 • 기업의 디지털 효율성 증가를 위한 H/W · S/W · 기술 투자(예를 들면 디지털 전기통신 시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통신 · 전기통신 제품, 전자AV장치, 디지털 콘텐츠 제품)
승인절차	장비 또는 기술의 인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MOEAIDB 또는 기타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세금감면 혜택	• 신규 장비 또는 기술의 인도일로부터 5년 동안 투자액의 5~2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특정 사업연도의 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마지막 연도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감면세액 추정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장비 · 기술을 인도일로부터 3년 내에 임대 · 판매 · 반환 · 폐기하는 경우(자연재해 제외)

※ 공제율

산 업	자동화 ·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 디지털 효율성 증가를 위한		
	신규 장비(%)	신기술(%)	최소투자금액 (대만달러)
텔레커뮤니케이션, 제조, 기술서비스	11	10	600,000
건설	8	5	2,000,000
통신, 영화제작, 농업, 폐기물 재생, 도소매	8	5	600,000

2) R&D 및 인력개발 공제⁸²⁾

-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과 직전 2년간 평균을 초과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표 II-92〉 대만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구분	R&D공제	인력개발공제
공제대상 비용	신제품 · 신기술의 연구, 생산 · 서비스 · 공정의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전액 기업의 R&D 부서에서 지출한 것 ¹⁾	사내외 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종업원의 개발이나 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부속서류	- 세무당국의 참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함. - R&D 계획, R&D 과정 동안 기록한 문서, 최종적인 R&D 보고서, 전임 R&D 종업원의 상세내역 등	- 세무당국의 참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인력개발계획, 훈련 참가자의 명단 및 개선보고서, 해외교육중인 종업원의 교육훈련 규정 및 지침 등
세금감면 혜택	- 대만의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① 연구및인력개발비가 직전 2년간 평균보다 작은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의 35% ② 연구및인력개발비가 직전 2년간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의 35%+직전 2년간 평균을 초과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의 50%) - 특정 사업연도의 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마지막 회계연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주: 1) R&D가 외부(예를 들면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82) Taiwan MOF(2007) p. 183.

3) 특정 기업의 주식투자

① 신흥·주요·전략산업(Emerging, Important, and Strategic Industries)

- ☐ 신흥·주요·전략기업에 투자하고 3년 이상 당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청약일로부터 4번째 되는 사업연도부터 5년 동안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표 II-93〉 신흥·주요·전략산업 주식투자에 대한 대만의 세액공제 혜택

구분	내 용
대상기업	신흥·주요·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발행한 기명주식에 청약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영리기업이나 개인
조세감면 혜택	청약일로부터 4번째 되는 사업연도부터 5년 동안 투자세액공제 가능
공제액계산	① 영리기업: 당해 주식 취득가액의 20% ② 개인: 당해 주식 취득가액의 10%(2000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1%씩 감소 ¹⁾). 다만, 당해 사업연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소득공제 신청	3년 동안 계속하여 기명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²⁾ 를 첨부해야 함.

주: 1) 따라서 2006/2007 과세연도에는 7%의 공제율이 적용됨.

2) 해당 기업이 사업장 소재지 세무당국의 승인을 거쳐 주주에게 발급함.

② 기반시설사업(Infrastructure Projects)

- ☐ 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민간기관에 투자하고 4년 이상 당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청약일로부터 4번째 되는 사업연도부터 5년 동안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표 II-94〉 기반시설사업 주식투자에 대한 대만의 세액공제 혜택

구분	내 용
대상기업	주요한 기반시설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이 발행한 기명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한 영리기업
조세감면 혜택	청약일로부터 4번째 되는 사업연도부터 5년 동안 투자세액공제 가능
공제액계산	당해 주식 취득가액의 20%. 다만, 마지막 사업연도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연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마. 특정 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 신흥·주요·전략산업(Emerging, Important and Strategic Industries)

- ☐ 신흥·주요·전략사업에 투자한 기업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당해 기업의 주주가 투자세액공제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표 II-95〉 신흥·주요·전략산업 주식투자에 대한 대만의 세금감면 혜택

구분	항목	tax incentive
투자기업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소득세 면제
투자기업의 주주	투자세액공제	5년 동안 투자액의 일정부분(영리기업: 20%, 개인 7%) 공제

2) 기반시설사업

- ☐ 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한 기업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당해 기업의 주주가 투자세액공제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표 II-96〉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대만의 세금감면 혜택

구분	항목	tax incentive
투자기업	소득세 면제	5년 동안 소득세 면제
	관세 면제	민간기관이나 직접 하청업체가 주요한 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치, 특수수송차량, 훈련 기구, 필수 부품·구성요소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투자기업의 주주	투자세액공제	5년 동안 투자액의 20% 공제

3) 생명공학 · 제약산업⁸³⁾

□ 행정원은 대만의 생명공학 · 제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근 이러한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비조세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공학 및 신규 의약품 산업에 대한 조례(Statute of the Biotech and New Medicine Industries)’를 승인함.

□ 조세감면 혜택

- 생명공학 · 제약기업의 법인주주는 생명공학 · 제약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당해 기업에 법인세 납부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 동안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 고도기술 제공자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실제 양도되는 시점까지 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

〈표 II-97〉 생명공학 · 제약 산업과 기타 산업의 투자세액공제 규정 비교

구 분		생명공학 · 제약 산업	기타 산업
근거법령		생명공학 및 신규 의약품 산업에 대한 조례	산업고도화촉진조례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생명공학 · 제약기업이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35%	주식 취득가액의 20%
	공제시기	당해 기업에 법인세 납부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기업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시점부터
기술제공 대가로 받은 주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지연		당해 주식이 실제 양도되는 시점까지 연기 가능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

83) Tax Notes Int'l(2007. 7. 23) p. 345.

4) 운영·생산과 관련된 기술 취득(Acquisition of Related Technologies on Operation and Production)

□ 운영·생산과 관련된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얻은 사용료 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세금면제, 세금납부 이연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98〉 운영·생산과 관련된 기술 취득에 대한 대만의 세금감면 혜택

구분	조세지원 내용
사용료에 대한 세금면제	• 국내 영리기업이 외국과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공장 설립, 제조, 제품 디자인, 공해 방지와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특수기술 사용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¹⁾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함. • 외국 영리기업이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함²⁾.
거래소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이연	MOEA가 지정한 신흥·주요·전략산업의 기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 이상의 지분을 제공하는 경우: 주식 취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납부를 5년 동안 연기할 수 있음 ³⁾ .
기술교환의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의 과세소득 계산 특례	기술교환 대가를 전액 스톡옵션으로 받은 자가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소득 계산: 옵션 행사일의 주가-특허기술비용-행사가격

주: 1) MOEA의 지적재산권사무소에 등기된 것이어야 하며, 통신·반도체·정보·가전제품·우주항공·의약·의료·공해방지·특수화학·선진재료·정밀·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2) MOEAIDB의 특별승인을 거친 후 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함.

3)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불가능하고, 이연기간 동안 주식이 양도되면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이연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5) 물류·유통센터(Logistics and Distribution Centers)

□ 외국의 영리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대만지점(직접 운영하든 다른 국내 기업이 수수료 약정에 의해 운영하든 관계없음)이 오로지 저장·단순가공·국내소비자에게 배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물류·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됨.

6) 운영총괄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 막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운영총괄본부를 대만에 설립한 기업은 해외의 관계기업에 관리 또는 R&D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예를 들면 사용료 소득, 투자이익,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며, 우대가격으로 공공 소유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음.

바.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 천연자원이 부족한 지역

- 천연자원이 부족하거나 낙후된 지역(예를 들면 Miao-Li 지역의 Tofen과 Chunan)의 특정 산업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영리기업은 투자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5년 동안 투자금액의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
- 적용가능 지역 및 업종, 투자금액, 종업원 수, 승인청, 신청서 신고기한, 적용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원이 발표함.

2) 자유무역항(Free Port)

- 국제적인 물류관리시스템을 위한 운영양식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23일 ‘자유무역항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표됐음.
- 현재 대만에는 행정원이 승인한 2개의 자유무역항이 운영중에 있음(Keelung 과 Kaohsiung 자유무역항).
- 자유무역항기업⁸⁴⁾이 해외에서 자유무역항으로 들어오는 물품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⁸⁵⁾.

〈표 II-99〉 대만의 자유무역항기업에 주어지는 세금감면 혜택

구 분	tax incentive
사업을 위해 해외에서 자유무역항으로 들어오는 물품	관세, 물품세, 영업세, 담배 및 와인세, 담배제품의 보건복지부담금, 무역촉진서비스수수료, 항구서비스부담금 면제
자체 사용을 위해 해외에서 자유무역항으로 들어오는 기계장치 ¹⁾	관세, 물품세, 영업세, 무역촉진서비스수수료, 항구서비스부담금 면제

주: 1) 5년 내에 과세지역으로 들어오면 다시 과세됨.

3) 과학산업단지, 수출가공구,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

□ 과학산업단지, 수출가공구, 보세공장 및 보세창구에 입주한 기업은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100〉 대만의 과학산업단지, 수출가공구,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간접세 혜택	경제가공구	과학산업단지	보세공장 · 창고
원재료 · 원료 · 부품 · 반제품의 해외 수입	관세: 면제 VAT: 면제	관세: 면제 VAT: 면제	관세: 면제 VAT: 면제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VAT: 면제	관세: 면제 VAT: 면제	VAT: 5% 적용하나 추후 환급
상품 · 서비스 해외 수출	VAT: 면제	VAT: 면제	VAT: 면제
대만 내의 다른 과세지역으로부터 원재료 · 원료 · 부품 · 반재료 · 기계류 구입	VAT: 면제	VAT: 면제	VAT: 면제

84) 자유무역항에서 무역, 창고, 물류, (화물)컨테이너의 수집 · 분배, 운반, 다른 배로 옮겨 싣는 것, 발송, 관세 정산, 조립, 분류, 포장, 수선 · 제작, 가공, 제조, 전시 또는 기술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사업을 허가받은 기업

85) 자유무역항기업이 자유무역항에서 과세지역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물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관세, 물품세, 영업세, 담배 및 와인세, 담배제품의 보건복지부담금, 무역촉진서비스수수료, 항구서비스부담금이 과세되나, 자유무역항 내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은 자유무역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제외하고 관세가 부과됨.

사.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 ☐ 신흥·주요·전략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를 면제받는 대신 해당 기업의 주주가 5년 동안 투자액의 일정 부분(영리기업: 2%, 개인: 7%)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 SOC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를 면제받는 대신 해당 기업의 주주가 5년 동안 투자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5.2.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⁸⁶⁾

가.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 2003년에는 SARS의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4년부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함.
 -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중 승인된 외국인직접투자는 1,846건, 139억만달러로서 전년 대비 230% 대폭 증가하여 유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⁸⁷⁾.
- ☐ 주요 투자국가 및 투자업종
 - 지역별로는 네덜란드가 54.2억달러(38.78%)로 1위를 차지했고,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이 17.9억달러(12.78%), 일본이 15.9억달러(11.39%), 영국이 15.6억달러(10.78%)로 그 뒤를 이음.
 -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제조업이 52.8억달러(37.77%)로 1위를 차지했고, 금융업이

86) KOTRA(2007.4.24.)

87) 이처럼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네덜란드 필립스가 TSMC 주식 36억달러 상당을 인수하고, 대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외국인들의 대만 금융기관 인수 및 주식 매입이 증가했기 때문임.

25.5억달러(18.26%), 금융투자업이 16.4억달러(11.79%), 컴퓨터·통신·AV전자제품산업이 12.8억달러(9.16%)로 그 뒤를 이음.

〈표 II-101〉 대만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만달러)

국가/지역	1990~2000 연평균	2002	2003	2004	2005
대만	1,774	1,445	453	1,898	1,625
중국	30,104	52,743	53,505	60,630	72,406
홍콩	13,841	9,682	13,624	34,032	35,897
동남아시아	22,161	15,774	19,920	25,666	37,136
아시아·오세아니아	76,616	96,244	110,489	157,328	199,951
개발도상국	134,670	163,583	175,138	275,032	334,285
전 세계	495,391	617,732	557,869	710,755	916,277

자료: UNCTAD(2007)

□ 대만의 투자유치 업무⁸⁸⁾

- 경제부 산하 투자업무처(Department of Investment Services: 이하 ‘DOIS’)가 중심이 되어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DOIS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주로 하나 대만기업의 국내외투자를 지원하는 등 국내외기업을 가리지 않고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88) Invest Korea(2006) p. 37.

6. 홍콩

6.1. 조세지원제도⁸⁹⁾

가. 개요

- 단순하고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조세체계를 갖고 있고, 세무조례에서 열거한 소득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시스템을 갖고 있음.
 - 홍콩 고용 및 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세(salaries tax)가, 홍콩 거래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윤세(profit tax)가, 홍콩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재산소득세(property tax)가 과세되나,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음.
- 국지주의(territorial basis)에 기초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없이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에 한해 소득세가 과세되나, 특정한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음.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상속세, 사회보장세 등이 없음.
- 다른 국가들과 달리 낮은 조세부담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뿐 별도의 조세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싱가포르와 상하이와의 경쟁에서 아시아 최고의 금융센터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근로소득세 및 이윤세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인하했음.

89) PriceWaterHouseCoopers(2007)를 참조하여 작성함.

나. 이윤세

- 홍콩에서 거래, 전문직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거래·전문직·사업소득에 대해 17.5%(2008 사업연도부터 16.5%)의 이윤세가 과세됨.
 - 국외원천소득은 홍콩으로 송금되더라도 이윤세가 과세되지 않음.
 - 소득의 원천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과 납세자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1998년 4월부터 사전예규시스템(advance ruling system)이 도입됨.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윤세 또는 원천징수세가 과세되지 않음.
- 홍콩에서 예치한 금융기관 예금(다만, 이자비용이 공제되는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예금 제외)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나, 이 규정은 금융기관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산업용·상업용 건물, 공장 및 기계장치 등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상 자본공제가 가능함.

〈표 II-102〉 홍콩의 자본공제제도

구분	자본공제
산업용 건물	20%의 초기공제와 4%의 연간공제
상업용 건물	4%의 연간공제
공장·기계장치	• 초기공제: 60% • 연간공제: 공장 및 기계장치 유형에 따라 10, 20, 30%의 공제율 적용
특정 고정자산	• 100% 즉시상각 가능 • 제도가공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공장 또는 기계장치, 컴퓨터 H/W(기계장치 또는 공장의 필수적인 부분 제외), 컴퓨터 S/W, 컴퓨터 시스템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이나 개조	• 5년에 걸쳐 상각 가능

6.2.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가.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 2002년 이후 홍콩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103〉 홍콩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만달러)

국가/지역	1990~2000 연평균	2002	2003	2004	2005
홍콩	13,841	9,682	13,624	34,032	35,897
중국	30,104	52,743	53,505	60,630	72,406
싱가포르	9,204	7,338	10,376	14,820	20,083
동아시아	48,777	67,350	72,174	105,074	118,192
아시아·오세아니아	76,616	96,244	110,489	157,328	199,951
개발도상국	134,670	163,583	175,138	275,032	334,285
전 세계	495,391	617,732	557,869	710,755	916,277

자료: UNCTAD(2007)

○ 총고정자본형성액 중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기여도는 97%로 6개 국가 중 가장 높음.

〈표 II-104〉 홍콩의 총고정자본형성액 중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기여도

(단위: %)

국가/지역	1990~2000 연평균	2003	2004	2005
홍콩	32.5	40.6	96.4	97
중국	11.3	8.6	8.0	9.2
싱가포르	36.5	46.5	58.0	78.9
동아시아	8.9	8.1	9.9	10.5
아시아·오세아니아	8.0	7.7	9.4	11.1
개발도상국	8.9	9.3	10.7	12.8
전 세계	7.6	7.3	7.7	9.4

자료: UNCTAD(2007)

□ 주요 투자국가 및 투자업종

- 주요 투자국가는 중국본토와 영국령의 버진 아일랜드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투자지주·부동산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 금융업, 도소매업 등임.

〈표 II-105〉 홍콩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2005)

(단위: 10억홍콩달러, %)

국가	중국본토	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	버뮤다	미국	일본	영국	기타
금액	1,271.90	1,270.7	327.1	271.5	205.8	131.7	88.5	489.1
비율	31	31	8	7	5	3	2	13

자료: 홍콩 투자청(www.investhk.gov.hk)

〈표 II-106〉 홍콩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2005)

(단위: 10억홍콩달러, %)

업종	투자지주, 부동산 등	도소매 수출입	은행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운송	보험	제조	기타
금액	2,410.30	556	510	155.9	101.3	74.7	70.5	177.6
비율	59	14	13	4	2	2	1	5

자료: 홍콩 투자청(www.investhk.gov.hk)

나. 재정상태⁹⁰⁾

- 단순하고 낮은 조세체계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음.
- 2004년 기준으로 홍콩의 조세부담률은 10%인데,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7.5%(2001년) 및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19.7%(2005년)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조세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로 OECD 회원국

90) 주홍콩총영사관(2006)

86.8%, 우리나라 93%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전체 수입의 74%가 소득세(이윤세 48.1%, 근로소득세 25.9%)에 편중되어 있어 세원이 넓지 못함.

□ 홍콩이 낮은 세율로도 재정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도시국가이고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이 이미 완비되어 있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크지 않을 뿐더러 정부토지수입⁹¹⁾, 채권발행수입 등과 같은 비조세수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홍콩은 안정적인 재정수입의 확보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조세개혁을 추진 중에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이하 'GST')와 환경세(Green Tax)를 도입하는 대신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임⁹²⁾.

○ 홍콩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부터 GST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GST의 도입은 일단 무산되었으며, 홍콩정부는 자문기간 동안 제시됐던 의견들을 취합하여 조만간 세원을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기로 함⁹³⁾.

91) 홍콩의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이며, 토지가치의 3%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음.

92) 이 중 상속세는 이미 2006년 2월 11일부터 폐지됨.

93) Parillo(2007. 6. 18.) p. 1200.

Ⅲ. 결 론

-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특별한 조세지원제도를 두지 않는 대신 주요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그 동안 연안지역에 소재하는 외자기업에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 왔으나, 최근 들어 투자과잉, 환경오염,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등 외자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혜택을 축소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18%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면기간이나 감면개시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 등은 정부와 외국인투자자 간에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맞춤형 조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 ‘신흥·주요·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산업고도화촉진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음.
 - 홍콩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소득세율(법인 16.5%, 개인 15%)을 갖고 있는바, 단순하고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조세시스템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해 서로 다른 조세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바, 이는 각 국이 처한 정치·경제적인 상황에 기초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 최적의 제도라고 말하기는 힘들.
 - 각 국이 처한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모방하기

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세뿐만 아니라 현금보조금 등 비조세유인책 등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시에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OECD의 유해조세경쟁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문헌

- 고용수 · 유재형, 「중국 기업 관련 세제개혁의 내용과 기대효과」, 『해외경제정보』 2007-20, 한국은행, 2007. 3. 16.
- 공용표 · 서재룡 · 조호연,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2006.
- 국세청,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5개 경제특구 혜택 유지할 것」, www.nts.go.kr
- 김득갑, 「EU 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과 정책적 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4. 5. 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수우대와 그 부작용」, 『중국 경제 현안 브리핑』 제06-14호, 2006. 9. 15.
- 매일경제, 『관세면제 혜택 폐지』, 2007. 2. 7.
- 박동창,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관련 발전전략이 주는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16-11, 한국금융연구원, 2007. 3. 12.
- 백상호 외, 『주요 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3.
- 세계일보, 「영국 투자청, 외국기업 원하는 대로 ‘맞춤서비스」, 2007. 5. 9.
- 외교통상부,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동향』, 2005.
- , 『싱가포르 경제동향(2007년 3월)』, 2007.
- 조선일보, 「싱가포르 간판 투자기관 테마섹과 GIC」, 2007. 4. 20.
- 조성근 · 서재룡 · 최정수,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2005.
- 주홍콩영사관, 『홍콩의 조세제도 현황 및 개편방향』, 2006. 8.
- 중앙일보,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후진」, 2006. 10. 16.
- 탁세령, 「최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진출관련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2006년 6월, 한국수출입은행, 2006.
- 한국조세연구원, 「2007년 유럽의 법인세율 인하(계획) 현황」, 『주요국의 조세동향』

07-03, 2007. 4.

Invest Korea,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

KOTRA, 『대만 경제동향 및 전망』, 2007. 4. 24.

_____, 『[영국] 영국의 투자인센티브』, 2006. 4. 24.

_____, 『벨기에, 유럽 4대 투자유치국으로』, 2006. 6. 10.

Park, Donghyu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orporation Taxation: Overview of the Singapore Experienc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2006.

IBFD, “Corporate and individual tax rates to be reduced,” TNS online, 2007.3.26.

Parillo, Kristen A., “Taxpayers Still Aren't Buying Goods and Services Tax,” *Tax Notes Int'l*, 2007. 6. 18.

PriceWaterHouseCoopers, *Hong Kong Tax Pocket Guide 2006/2007*, 2007.

PRS Group, *Political Risk Yearbook: Malaysia Country Forecast*, 2007.

Taipei Times, “Ministry of Finance proposes extensive overhaul of taxes,” 2007. 3. 22.

Taiwan MOF, *Guide to ROC Taxes 2007*, 2007.

_____, “Yuan Approves Incentives for Biotech, Pharmaceutical Industries,” *Tax Notes Int'l*, 2007. 7. 23.

UHY, *Doing Business in Singapore 2006*, 2006.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2007.

Wang, Zhenhua, “Corporate Tax Reform in China: Background, Features, and Impacts,” *Tax Notes Int'l*, 2007. 4. 2.

investintaiwan.nat.gov.tw/en/

www.britishembassy.gov.uk

www.deloittetaxguides.com

www.hmrc.gov.uk

www.ibfd.org

www.investhk.gov.hk

www.investkorea.org

www.iras.gov.sg

www.koreaexim.go.kr

www.koreanembassy.cn

www.mida.gov.my

www.mof.gov.sg

www.mof.gov.tw

www.ntat.gov.tw

www.singstat.gov.sg

www.ukinvest.gov.uk

세법연구 07-10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2007년 12월 22일 인쇄

2007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홍범교 · 기은선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85-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